



이 자료집은 어선들 거예요.

9.2  
5시 30분 - 6시

2006

#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워크숍

때 : 2006년 8월 26~27일

곳 :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2006

#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워크숍

때 : 2006년 8월 26~27일

곳 :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차례

워크숍 일정 .....	2
몸풀기 마음열기 .....	3
강연 1) 인권교육이란 무엇인가? .....	4
강연 2) 한국사회 정체성과 노동운동 바로보기 .....	14
활동 1. 남남 노동인권 뷔페 .....	43
활동 2. 노동인권교육 체험마당 .....	44
활동 3.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	54
활동 4-1.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서 .....	54
활동 4-2. 알바 생활 백서 .....	55
노동인권교육 사례 .....	56
활동 5. 똑딱 똑딱 조건별 프로그램 만들기 .....	65



## 워크숍 일정

워크숍 일정		
첫째날 (26일)	10:00	등록
	10:30	몸 풀기 마음 열기
	11:30	남남~ 노동인권취폐
	12:30	점심
	1:30	노동인권교육 체험 한마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런 마을 저런 마을”</li> <li>■ “체자리인가”</li> <li>■ “정보 먹는 하마”</li> <li>■ “자꾸 자꾸 멀어져간다”</li> </ul>
	4:00	휴식
	4:30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 직장내 성차별
	5:40	저녁
	7:00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서(상황극) + 알바생활백서(콩트)
	9:00	강연1 : 인권교육의 의미와 방법론 (배경내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9:30	너이버 지식검색 : 노동인권에 관한 궁금증 풀이 한마당	
10:30	친교의 시간 & 뒷풀이	
둘째날 (27일)	8:00	아침, 산책
	10:00	강연 2 : 노동인권교육의 가능성 (하종강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
	11:30	노동인권교육 실천 사례 발표
	12:00	점심
	1:00	좌충우돌 노동인권교육 :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면서 당면하게 되는 문제 해결
	2:00	휴식
	2:15	똑딱똑딱 조건별 프로그램 만들기 : 대상, 교육조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직접 짜보는 시간
	4:00	평가와 격려
	5:00	이별

## ★ 몸풀기 마음열기

첫 만남에서의 어색함을 놀이를 통해 해소하고,  
워크숍 기간 동안 함께 지내게 될 사람들의 이름을 알고 기억한다.

## ▶ 공간 채우기(30명)

- ① 손을 잡고 가장 큰 원을 만든다.
- ② 원의 공간을 가로지르며 자유롭게 걷는다.
- ③ 진행자가 ‘정지’를 외치면 멈춘다.
- ④ 빈공간이 생긴 곳을 살펴본다.
- ⑤ 하나 둘 셋을 외치면 동시에 한번만 움직여 빈 공간을 채운다.
- ⑥ 자유롭게 걸으면서 인사를 한다. (눈인사, 목례, 어깨, 발악수……)
- ③~⑤를 반복한다.

## ▶ 손 잡아주기(15×2명)

- ① 무지개 색깔로 이름을 정한다.
- ② 서로의 색깔을 기억하며 자유스럽게 걷는다.
- ③ 진행자가 색깔을 외치면 해당하는 사람은 손을 들며 쓰러진다.
- ④ 주위사람은 쓰러지지 않도록 손을 잡아준다.
- ⑤ 만약 손을 잡아주기 전에 쓰러지면 나머지 사람도 모두 쓰러진다.

## ▶ 풍선 띄우기(7~8×4명)

- ① 손을 잡고 원을 만든다.
- ② 손을 잡은 상태에서 협동하여 풍선을 띄운다.
- ③ 1~3개의 풍선을 동시에 띄운다.

## ▶ 이름표 만들어 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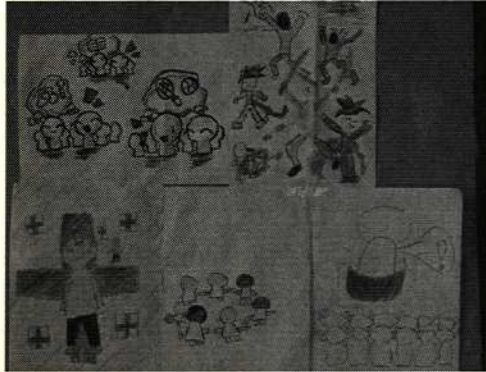
- ① 자신이 불리고 싶은 이름을 쪽지에 적어 한 곳에 모은다.
- ② 참여자들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무작위로 뽑아간다.
- ③ 자신이 뽑은 이름에 대한 이름표를 만들어 이름주인에게 선물한다.
- ④ 모듬원의 이름을 기차처럼 이어가며 이야기를 만들어 발표한다.



[강연 1] 인권교육의 의미와 방법론

인권교육이란 무엇인가

- 배경내(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활동가)



“교육은 바로 그것이 다른 이해들을 위해 사용될 위험에 끊임없이 놓이게 될지라도, 근본적으로 인간해방의 이상과 연결되어 있다. 계급착취, 성별, 그리고 인종적 억압에 의해 굴절된 사회에서, 그리고 전쟁과 환경파괴의 만성적인 위험 속에서도 교육이 가치로울 수 있는 유일한 점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 자신의 해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는 의미에서이다. 학교의 본분은 위험하고 병든 세계를 개혁시키기 위한 지식, 기술, 개념들을 사람들에게 준비시키는 것이다. 가장 기본적인 의미로 교육의 과정과 해방의 과정은 같은 것이다.”

- Connell, R. W. et al., Making the Difference, Sydney: George Allen & Unwin, 1982

1. 인권교육의 의미와 중요성

◎ 인권교육이란

- “학습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과정을 통해 인권에 대한 지식을 획득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태도를 형성하며 인권을 옹호하고 방어할 수 있는 행동능력을 길러냄으로써, 인간의 잠재된 능력을 개발하고 현실에 존재하는 다양한 사회적 억압과 착취적 현실로부터 스스로를 해방시킬 수 있는 힘을 길러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계된 교수-학습의 과정”

◎ 왜 인권교육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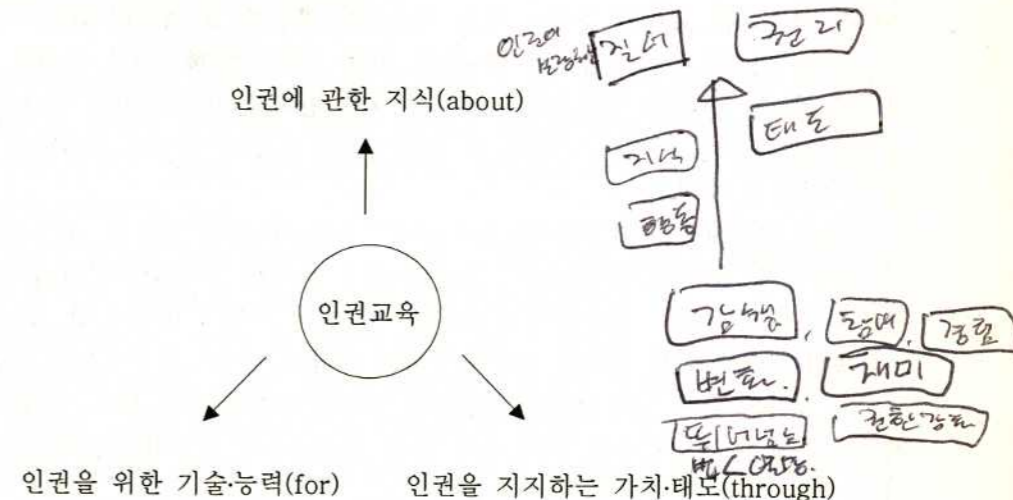
- 인권교육은 침묵과 굴종의 문화를 극복하고 인권을 억압하는 법과 제도, 정책과 관행, 반인권적 편견과 가치가 태동하거나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인권의 문화’를 성숙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인권교육은 인권에 기초한 새로운 개인적·사회적·국가적·인류적 정체성을 형성함으로써 인권침해를 야기하는 일상적 삶의 구조와 문화에 저항하는 실천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이를 통해 인권교육은 사회적 약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인권침해를 외면하지 않는 ‘연대의 문화’를 형성하고자 한다.

- 권리를 알 권리 : 인권교육은 그 자체로서 하나의 권리이기도 하다. 권리를 아는 자만이 권리를 행사하고 자신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권교육은 모든 권리의 실현을 위한 기본적 권리일 수밖에 없다.

◎ 인권교육의 목표와 내용

- 인권교육의 내용은 인권교육의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달려있다. 인권교육이 단지 이미 규정된 권리의 목록만을 기계적으로 학습시키는 데 목표를 둔다면 이는 인권교육이 ‘해방의 과정’이 아닌 ‘지배의 도구’로 전락했음을 의미한다. 인권교육의 목표는 단지 권리의 목록을 학습시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들이 자신의 삶과 경험을 이해하고 인권의 원칙에 기초한 사회적·국제적 질서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변형의 힘’을 길러주는 데 있다.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다양한 형태의 억압과 착취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 이를 통해 일상생활을 인권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재조직’하는 것이야말로 인권교육의 진정한 목표가 되어야 한다.

- 인권을 무시하는 방법으로는 인권을 가르칠 수 없다 : 인권의 가치를 전달하고 인권을 옹호하는 능력을 길러주고자 하는 교육이 인권을 무시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인권교육은 학습자들이 인권을 스스로 해석하고 인권의 개념을 재창조해낼 수 있도록 자율성을 기르고 권한을 강화하는 데 목표를 두어야 한다.





## 2. 인권교육의 정의를 둘러싼 갈등

## ◎ 정부 기구들의 정의

- : 목표와 성과에 대한 정부들의 헌신, 특히 질서와 국가 자체를 유지하는 것 강조
- : 평화, 지속성, 사회질서를 창조하는 인권교육의 역할 강조. 따라서 평화, 민주주의, 발전, 관용, 사회정의 같은 단어가 반복
- : 국제적·지역적 문서들에 대한 학습을 강조.

## ◎ 민간단체들의 정의

- : 인권교육을 사회변화의 도구로 여김. 정부 권력을 제한하는 것, 국가 권력으로부터 민중을 보호하는 것, 일부 경우에는 민중으로 하여금 국가권력을 장악하도록 하는 것.
- : 취약한 집단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인권교육의 잠재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침해를 강조하고, 억압자들에게 도전. 권력, 권한강화, 갈등, 보호, 방어, 피억압자와 억압자, 피해자, 침해 같은 단어들 반복.
- : 역사적으로 부인돼온 권리들을 주장 또는 요구하는 수단으로서 인권교육을 강조.
- : 빈곤, 권력과 기회의 조직적인 불평등 같은 부정적인 힘을 초래하는 조건을 분석하고 근절하기 위한 학습을 강조.
- :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권력의 원천(예를 들어 초국적 사업과 비국가 행위자들)에도 점차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회변화를 꾀함.

## 3. 인권교육의 방법론

- 모든 교육이 그러하듯이 인권교육은 인권의 실현과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는 동시에 교육의 과정 그 자체가 해방의 과정이 될 수 있어야 한다. 그 출발은 학습자를 교육의 중심에 두고 학습자의 경험과 그 경험에 대한 지식을 가장 큰 교육의 자원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습자의 역동적 참여를 보장하지 않으면 안된다. 인권교육의 과정을 통해 참여의 기쁨을 알고 참여능력을 기르게 된 학습자는 결국 자신의 삶과 그 삶이 구성되고 있는 사회에 참여하는 역량을 기를 수 있게 될 것이다.

- 그래서 인권교육은 일방향적·지시적·권위적 교육이 아닌 경험적, 활동중심적, 참여적, 변증법적, 분석적, 문제제기식 교육의 원칙 하에서 구성되어야 한다. 역동적으로 창조·재구성되는 지식, 쌍방향적 의사소통, 학습자의 역동적 참여 보장, 지시자나 이미 고착화된 인권에 관한 지식의 전달자가 아닌 지식의 재창조 과정에서의 촉진자·안내자로서의 교사의 역할, 모둠활동을 중심으로 활발한 논쟁의 기회 부여, 학습자의 관심과 욕구에 기반한 자기학습의 기회 보장 등이 인권교육이 이루어지는 방법론의 원칙이다.

## ■ 인권교육 방법론의 원칙

- 경험적 : 학습자들이 자신을 둘러싼 조건과 그 조건 속에서 인권이 작동하는 방식을 자신의 경험에 기반하여 비판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활동중심적 : 학습자의 사전 경험과 지식을 잘 이끌어내는 활동을 고안해야 한다. 인권교육의 과정은 학습자들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과정이며, 학습자들의 사전 지식과 인지들을 잘 파악해야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방식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다.
- 문제제기적 : 학습자들의 생각이나 대답 가운데 일관성이 없거나 부조리한 부분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져야 한다.
- 참여적 : 개념을 명료하게 이해하고 주제를 잘 분석할 수 있도록 집단적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경험은 경험과 지식의 확장과 이에 대한 성찰을 돕는다.
- 변증법적 : 학습자가 이미 갖고 있는 사전 지식(명제)을 관련 자료나 사건, 통계 등(반명제)을 통한 다른 종류의 지식과 비교하여 재해석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결론(새로운 명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분석적 : “왜”, “어떻게”라는 질문을 통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자신의 생각이나 의식이 기반하고 있는 중심 원리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 사례

## 'ADIDAS' 방법론

ARRC(Asian Regional Resource Center for Human Rights Education)는 1995년 아시아지역 민간단체들이 함께 참여한 인권교육 워크숍에서 'ADIDAS'기법을 소개했다. 이 방법론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 A(Activity) : 학습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거나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을 재창조, 재해석할 수 있도록 움직이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새로운 경험을 제시하고 경험을 재창조할 수 있으며, 주제에 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 D(Discussion) : 활동을 통해 학습자가 갖게 된 느낌과 생각, 자신의 선행지식이나 경험과의 비교 등이 표출될 수 있도록 질문과 토론을 배치한다.
- I(Input) : 학습자의 사전 지식이나 사용한 개념 가운데 잘못된 내용은 수정해주고, 제시된 문제상황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구체적 사례나 사건, 통계자료 뿐 아니라 활동과 토론의 과정에서 나온 학습자들의 경험도 정보가 될 수 있다.
- D(Deepening) : 제시된 정보를 통해 학습자의 경험과 지식을, 학습자의 경험을 통해 제시된 정보를 재평가하고 새로운 관점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한다.



·A(Analysis) : '왜'라는 질문을 던짐으로써 이제 학습자 자신이나 주위의 제한된 경험의 교류에서 벗어나 거시적 수준의 관점을 획득할 수 있도록 한다. 갈등과 문제의 궁극적인 원인과 구조, 문화적 배경, 그것들 간의 상호연관성, 그것이 초래하고 있는 파급적 결과를 구조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S(Synthesis) : 이제까지 나온 정보와 지식을 요약하고 종합하는 과정이 아니라, 앞을 실천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어떻게'라는 질문을 통해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중요한 것은 거시적 수준의 장기적 해결전략뿐 아니라 '지금 그리고 여기서' 학습자 스스로가 실천할 수 있는 단기적 과제를 찾아내는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 학습자에게 교실과 학교의 벽을 넘어 사회로 확장된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 ■ 촉진자로서의 교육활동가의 역할

1. 참가자가 그 주제에 대해 아무 것도 모를 거라고 가정하지 말라.
2. 너무 전문적이거나 감정적인 언어를 사용하지 말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평범한 언어를 사용하라.
3. 참가자와 촉진자, 참가자 상호간의 친밀성이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 어색한 분위기를 깨뜨리고 내면의 감정과 생각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라.
4. 참가자들의 기대와 욕구를 파악하고 교육활동을 구성할 때 이를 반영하라.
5. 참가자 모두가 골고루 토론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하라.
6. 자유스럽고 재미있고 유연한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라.
7. 학습자가 활동과정에 대한 인상, 교육활동을 통해 얻어낸 통찰을 촉진자에게 피드백할 수 있는 기회와 방법을 제공하라.
8. 촉진자가 학습자보다 더 우월하고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지 않도록 하라. 그렇다고 자신감이나 능력을 결여하고 있다는 인상을 남겨서도 안된다. 참가자들의 의견과 감정을 존중하고 있음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9. 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하라. 촉진자의 이야기시간을 최소화하고 참가자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화하라. 몇몇 개인이 대화와 토론을 독점하지 않도록 유의하라.
10. 참가자들과 논쟁을 벌이지 말라. 단지 참가자들의 주장에 도전하는 문제제기식 질문을 던지면 된다. 중요한 것은 참가자들을 그럴 듯한 말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다. 토론을 통해 나온 이야기들을 정리하고 생각해볼 점을 제시하는 것이 촉진자의 역할이다.

11. 참가자들이 교육과정을 평가할 수 있도록 격려하라. 교육과정의 장단점을 참가자들 스스로 평가하도록 한다면 다음 교육과정에서는 좀더 효과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12. 시간에 주의를 기울여라. 참가자들이 충분히 곱씹어보고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동시에 토론이 너무 과열되거나 참가자들이 지겨워하지 않도록 시간조절을 잘 해야 한다.

13. *프로그램의 목적을  
인간행동  
진행함.*

#### 4. 프로그램의 실제

##### ◎ 시·그림·음악 등 예술활동의 활용

: 특정 주제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공감능력을 기르는 데 효과적이다. 글쓰기의 경우 시, 노래가사, 에세이 등을 직접 쓸 수도 있고, 이미 쓰여진 글을 읽고 토론해볼 수도 있다. 그림의 경우 그리기, 색칠하기, 모빌 만들기, 콜라주, 조각, 사진찍기, 설치하기, 포스터나 현수막 만들기, 티셔츠 만들기 등 무한한 방법이 있다. 음악과 춤은 청소년들의 영감을 자극하고 활동적으로 만든다.

##### ◎ 이미지 해석

: 사진, 그림, 카툰, 공예품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추상적인 개념에 대한 느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핵심적인 질문을 통해 참여자의 느낌을 정리하게 한다.

##### ◎ 놀이(Game)

: 다루고자 하는 특정 주제에 대한 학습자의 흥미를 유발하고 새로운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인권을 지지하는 태도를 익히도록 돕는다.

##### ◎ 애니메이션·영화 등 시청각자료의 활용

: 현실의 상황을 이해하고 대안적 삶의 양식을 전달하는 데 유용하다. TV 드라마나 인권을 주제로 한 영화를 활용할 수 있다.

##### ◎ 사례연구

: 실제나 실제 있을 법한 가상의 사건을 분석함으로써 토론의 활성화를 도울 수 있다.

##### ◎ 체험하기

: 실제 인권침해 상황을 직접 체험해 봄으로써 타인의 고통에 대해 공감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다.

##### ◎ 시뮬레이션



: 실제 상황의 재현이다. 문제의 상호연관성을 이해하고 협력을 통한 문제해결의 방식을 배울 수 있다.

◎ 드라마·역할놀이·참여연극

: 특정상황 속에서 주어진 서로 다른 역할을 체험함으로써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변화되어야 할 문제점과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프로젝트

: 특정 주제를 선정하여 인권 현실에 대해 깊이있게 조사해보도록 하고 해결 방안을 담은 보고서, 홈페이지 등을 제작, 발표하도록 함으로써 특정 주제에 대한 깊이있는 분석 능력과 대안 제시 능력을 기를 수 있다.

◎ 도표와 통계의 활용

: 도표나 통계 자료를 제시하여 자료들이 담고 있는 인권문제와 관련한 경험이나 의견 등을 나누어볼 수 있다. 이는 개인적 경험이나 의견을 객관적 자료나 상황에 비추어 재평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 기념일 행사 및 캠페인 기획하기

: 인권과 관련된 날을 기념하여 기념행사나 캠페인을 직접 기획해 보거나 기념행사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그 의의나 효과를 인식하고 더 나아가 인권옹호를 위한 연대활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 탐방 또는 현지답사

: 인권과 관련된 역사적 장소나 인권지킴이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나 단체의 홈페이지 등을 방문·연구하도록 함으로써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 변화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도울 수 있다.

5. 인권교육 실천사례와 원칙

◎ 인권교육에서 참여자들의 경험은 가장 중요한 교육의 자원이다. 각자의 경험과 삶의 재료들이 자유롭게 교육의 과정 속으로 초대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잘 짜여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인권교육은 지식의 전달이든 사회의 변화이든, 어떤 목표를 일구어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목적 자체로 간주되어야 한다. 교육을 도구적으로 대하다 보면 인권교육 참여자들을 대상화하고 인권교육 과정에서 빛어지는 역동적인 변화와 잠재력을 간과할 위험이 있다. 인권교육은 사회변화를 위한 토대일 뿐만 아니라, 사회변화 그 자체이기도 하다.

<예 1> “차마 하지 못한 말”

■ 교육 방법

- ① 경찰서, 법원, 소년원 등 포스트를 정해두고 각자 하고 싶은 말이 가장 많은 곳으로 찾아간다.
- ② ‘그곳을 떠올리면 어떤 느낌이 드나’, ‘왜 그런 느낌이 들었나’, ‘그곳에 있을 때 어떤 일을 겪었나’ 이야기해본 다음, ‘그때 꼭 하고 싶었는데 못했던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 떠올려본다.
- ③ 학생들이 말하지 못했지만 하고 싶었던 말들로 말풍선을 채우고, 돌아가며 모둠별로 발표를 한다.
- ④ 다시 공간으로 돌아와 그때 어떤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는지 떠올려본다.
- ⑤ 사법절차 과정에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의 이름으로 발표 내용을 정리해 준다.

- 다산인권센터/인권운동사랑방/평화인권연대, 안양소년원 청소년 인권교육, 2005 중에서

■ 실제 교육과정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동안 청소년들은 경찰서, 법원, 소년원에서 자신들이 직접 겪었던 폭력의 경험을 드러냈고, 교육과정을 통해 그녀들이 당시 가졌던 느낌과 생각에 대해 진정어린 지지를 경험했다. 나아가 모뎀토론을 통해 그녀들 스스로 사법절차에서 보장받아야 할 인권의 기준들을 찾아냈고 문제해결 방안을 제안했다. ‘터뜨리지 못한 말풍선’을 채워보도록 한 것은 그녀들의 경험을 교육에 적극 초대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 인권교육에서 참여적 방법론은 인권교육의 본질적 요소를 구성한다. 인권교육이 추구하는 살아있는 인권 감수성, 비판적 인권의식, 자율적 행동능력의 고양은 역동적인 참여를 통해 가능하다.

<예 3> 나의 하루 + 나는야 인권설계사

■ 교육 방법

<1차 교육> 나의 하루

- ① 10대 지체장애여성, 고3수험생, 여성 청소용역 노동자, 이주노동자, 아르바이트 청소년 등 다양한 소수자의 이름이 적힌 쪽지를 나눠준 다음, 이들은 하루를 어떻게 보내고 있을지 생각해 보도록 한다.
- ② 잠시 후 두 사람씩 무대로 나오게 한 다음, 진행자가 부르는 시간대에 따라 그 시간에 하고 있을 것 같은 행동을 몸짓으로 표현한다.
- ③ 발표가 끝나면 관객들로 하여금 어떤 사람이 무대에 등장했는지 알아맞춰 보게 한다. 혹시 이해되지 않은 몸짓이 있었다면 질문을 던진다.
- ④ ‘나의 하루’를 지켜보면서 관객은 어떻게 느꼈는지, 소수자의 입장을 연기한 사람은 어떻게 느꼈는지 이야기를 나눠본다.



<2차 교육> 나는야 인권설계사

- ① 마을버스, 지하철, 병원, 공중화장실, 쇼핑매장, 학교, 도서관, 구청, 우리 공부방 등 공간 이름이 적힌 쪽지를 모둠별로 하나씩 나눠준다.
- ② 앞서 나온 사람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이 공간이 어떻게 변화되면 좋을지를 논의해 본 다음, 그림으로 그려본다.
- ③ 모둠별 작업 결과를 발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다면 들어본다.
- ④ 그림에 등장한 새로운 공간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뒤따라야 할지 토론했다.

- 인권운동사랑방, 공부방교사 인권교육, 2004 중에서

■ 실제 교육과정

이 프로그램은 푸른학교, 두리하나공부방 등 공부방 교사들을 위한 인권교육 워크숍 때 활용했던 사례이다. '나의 하루'를 직접 연기해 보면서 교사들은 소수자의 삶을 좀더 구체적으로 느끼고 고민하게 되었고, 그 결과 주위의 필수 생활시설들이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활발한 토론을 전개했다. 소수자의 입장에서 보는 경험 없이 그들에게 어떤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지를 이론적으로 설명해주기만 한다면 '마음'을 움직이는 교육이 되기 힘들었을 것이다.

◎ 인권교육은 법을 뛰어넘는 인권의 열망을 길러내는 교육이다. 인권교육은 이미 정해져 있는 인권기준을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인권기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감수성과 힘을 길러줄 수 있어야 한다.

<예 4> 숨은 그림 찾기 + 안전도우미 선물

■ 교육 방법

<1차 교육> 숨은 그림 찾기

- ① '산업재해 그림판'을 모둠별로 하나씩 나눠준다.
- ② 그림을 보면서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장면들을 찾아보도록 한다. '산업재해이다 혹은 아니다'를 판단한 기준은 무엇이 될 수 있는지를 모둠별로 이야기해보도록 한다.
- ③ 모둠별 토론 결과 발표가 끝나면 산업재해를 판단하는 기준을 소개한 [해설]을 나눠준다. 해설을 읽어본 다음, 전체적으로 산업재해임에도 불구하고 놓친 그림이 없는지 재검토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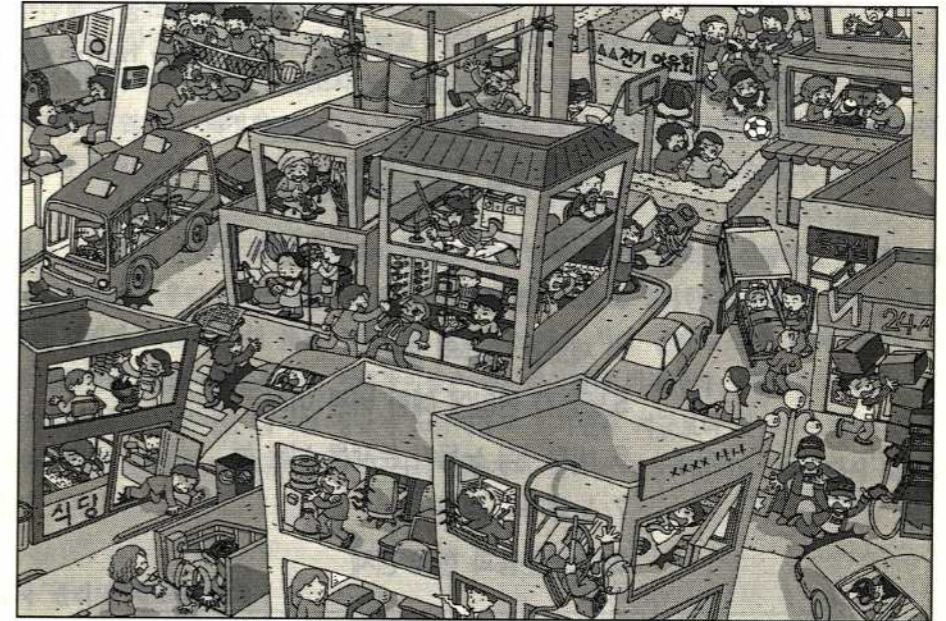
<2차 교육> 안전도우미 선물

- ① 산업재해 그림판에서 산업재해로 분류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안전 도우미'가 필요한지 모둠별로 토론했다.
- ② 작게 오려진 종이카드를 여러 장 나눠준 다음, 각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장치나 장비의 이름을 쓰거나 간단한 그림으로 그려본다.

- ③ '안전 도우미' 선물을 모두 꾸렸으면, 각각의 상황 옆에다 카드를 붙인다.
- ④ 모둠별로 나온 상황별 선물을 비교해 보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반적인 대책을 토론했다.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똑딱 노동인권교육 하실래요?>, 사람생각, 2005 중에서



■ 실제 교육과정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산업재해를 판단하는 현행 법적 기준을 알기 위한 데 있지 않다. 만약 그렇다면 주요 법조항 설명과 판례 분석을 중심으로 둔 강의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이와 달리 이 프로그램은 노동자의 입장에서 어떤 질병과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지를 따져보고,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지를 고민해보는, 인권의 상상력을 키우는 데 목적을 둔 것이다.

실제 <산업재해 그림판> 분석을 하다 보면, 현행 노동법이나 근로복지공단의 산업재해 인정 기준과 노동자들의 입장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가 자연스럽게 얘기되면서 현행 기준의 한계를 짚어낼 수 있다. 나아가 '안전도우미 선물'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위해 어떤 적극적 인권 보장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지를 찾아나갈 수 있게 된다.



강연 2

# 한국 사회 정체성과 노동운동 바로 보기

하 종 강 / 한울노동문제연구소장  
www.hadream.net

1. 한국 사회 노동문제의 특징
2. 미래 사회 노동자·노동조합의 전망
3. 역사 발전 과정과 사회 정체성
4. 제도권 교육의 모순
5. 노동자 권리에 대한 바른 이해
6.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보는 눈
7. 노동자와 역사
8. 노동운동과 한국 경제

## 1. 한국 사회 노동문제의 특징

### 세상을 보는 올바른 관점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같은 사실도 달리 보게 마련이다. 똑 같은 사실을 노동자는 노동의 관점으로, 경영자는 자본의 관점으로, 정치인은 권력의 관점으로 본다. 사실은 하나인데 설명이 세 가지이니 그 세 가지가 모두 맞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과연 누구의 관점이 옳은 것일까?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최소한 우리가 인정해야 할 것은 '노동자들의 주장이 옳은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하나의 사실에 대해 각각 다르게 주장하다가도 몇 년의 세월이 지나 노동자의 주장이 옳다고 밝혀지는 경우가 수없이 많았다. '전교조'의 합법화, '위험작업중지권'의 신설, '제3자개입금지'의 폐지, '복수노조'의 인정, 공무원의 단결권 인정 등이 모두 그 대표적인 예들이다.

노동문제뿐만 아니라 정치사회적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세계에서 가장 짧은 기간 동안의 가장 놀라운 경제 성장을 자랑했던 박정희 정부의 '한강의 기적'에 대해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노동

자의 저임금을 경쟁력의 기반으로 하는 그릇된 경제 정책이 언젠가는 우리나라 경제를 빈 껑푹으로 만들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었고 그 예언은 24년 후에 정확하게 적중했다. '아하, 이래서 노동자가 진보세력이라는 것이로구나' - 이론적으로 따지기 전에 현실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 노동자 권리 주장이 어려운 사회

어쭙잡게나마 노동문제에 관한 일을 직업으로 선택한 뒤 24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노동자 권리에 대해 이야기하기가 요즘처럼 조심스럽고 어려운 시기가 일찍이 없었다. '임금 인상'이나 '근로 조건 개선'처럼 지극히 당연한 요구조차 남 몰래 숨죽여 속삭여야 했던 80년대 암흑의 시대에도 지금처럼 어렵지는 않았다. 박정희로부터 노무현 대통령까지 모두 여섯 명의 대통령을 거치는 동안 과거의 그 어떤 정권에서도 지금처럼 노동자의 권리를 옹호하기가 어려운 적은 없었다.

사람들은 장애인의 권리가 확대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여성의 권리가 신장되는 것 역시 옳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우리 사회 전체에 유익한 진보의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들의 권리가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확대되는 것은 사회 전체에, 특히 한국 경제에 극히 해롭다고 생각한다. 조금 아는 척하는 헛똑똑이들은 영세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는 당연히 지금보다 확대돼야 하지만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기득권은 지금보다 낮아지는 것이 한국 사회 전체에 유익한 길이라고 착각한다. 우리 사회 노동자의 권리는 정상화되기도 전에 다시 뒷걸음질치고 있다.

### 노동자 권리와 제도권 교육

파업을 준비하고 있던 조종사들에게 "조종사로 취업하면서 '내가 노동조합의 깃발 아래 모여 파업하게 될 것이다'라고 미리 짐작했던 사람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파일럿트가 되겠다는 청운의 꿈을 안고 사관학교에 입학하면서 하다못해 '노동조합이라는 단어가 나의 인생과 관계를 맺게 될 것이다'라고 짐작했던 사람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라고 질문을 해 보았다.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다. 며칠 뒤에 구속될 것을 각오하고 파업까지 해야 하는 사람들이 수십 년 세월 동안 그것을 까맣게 모르고 살았다. 이것은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우리 나라는 노동자·노동조합·노동운동 등에 대한 그릇된 혐오감을 수십 년 세월 동안 국민들에게 주입시켜온 사회다. 문제는 그 잘못된 시스템 대한민국에서 수십 년 세월을 살아온 사람들이 그 사실을 거의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경제활동인구의 가장 많은 숫자가 노동자이다. 국민 대부분이 노동자이거나 그 가족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회에서 그 어떤 제도권 교육과정에서도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합의 역사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는다. 그렇게 성장한 우수한 인재들이 대기업 노무관리자가 되면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노동조합을 탄압한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신성한 권리를 탄압하는 사람들이 죄의식조차 없다. 이것은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한 달 동안 네 명이나 되는 노동자가 스스로 목 매달아 죽고, 불 타 죽고, 떨어져 죽었는데도 국



회에서는 그것에 대해 발언하는 의원이 없다. 서울시의회 102개 의석 중 유일한 민주노동당 소속 심재욱 의원이 서울시에서 연간 100억원 이상의 지원을 받는 4개 직업전문학교에 대한 행정감사를 하면서 2천5백명의 졸업생들의 취업 실태를 파악해보니 대부분 취업한 회사에서 1년을 넘기지 못했고 취업한 곳의 3분의 1이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이었다. 파견회사나 용역회사가 상당한 수를 차지하고 있어 결국 서울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용역사업에 사람을 대주는 꼴이었다. 심 의원이 예비 노동자인 직업전문학교 학생들에게 노동법을 정규 교육으로 가르칠 것을 직업전문학교 교장들에게 주문했더니 회의장에 난리가 났다. 다른 의원들이 “이것은 지금 노동운동을 유도하는 발언입니다”라는 말을 시작으로 “취업자들 중에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냐?”,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인성교육 다시 시켜라”, “일순간에 엎어 버리려고 하는 것들이 문제다”, “노동자라고 하지 말아라 직원이라고 표현해라”라는 말들을 해대다가 급기야 토론 자리에서는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민주노총 같은 조직은 해체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다니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한가. 이것이 바로 우리 사회 정치인들의 노동문제에 대한 이해 수준의 현주소다. 이것을 어떻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가? 도대체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 2. 미래 사회 노동자·노동조합의 전망

### 기계파괴운동의 숨은 뜻

17-18세기 유럽 ‘메뉴팩처 시대’의 수공업적 노동자는 ‘장인’이었다.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지금의 대학교수 급이었다. 숙련된 기술을 독점할수록 그들의 특권이 보장되는 것이기에 장인들은 숙련된 기술을 전수하는 데에 복잡하고 인색한 제도를 만들었다. 식민지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상품의 수요를 창출했으나 그 상품을 생산하는 숙련된 노동자의 일손은 턱없이 부족했으니 그들의 특권을 갈수록 강화되었다. 나중에는 일주일에 4일 정도만 일했다.

중세의 도시는 해체된 농촌의 장원에서 물려든 해방 농노와 그 가족 등 전체 인구의 70%가량을 날품팔이 대중에 차지하고 있었고(중세의 도시가 배경인 서양 영화에서 흔히 보이는, 남루한 옷을 걸치고 이리 저리 물려다니는 무리들이 바로 그들이), 수공업 노동자는 그 날품팔이 대중 위에 군림하는 소수의 특권층이었다.

수공업적 노동자의 특권을 분쇄하기 위해 생산에 기계가 투입되기 시작했다. 19세기에 이르러 섬유산업과 정미산업 등에서는 자동화, 기계화가 거의 완성상태에 도달했고, 섬유 노동자, 방앗간 노동자들을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었다. 우리가 배운 ‘기계 파괴 운동’은 이에 대한 특권층 노동자의 저항이었다. 당시 망치를 들고 기계를 때려 부순 노동자들은 우리가 막연히 짐작했던 것처럼 “혈벗고 굶주린 노동자 대중”이 아니었던 것이다.

### 최초의 노동조합

특권을 상실하기 시작한 노동자들이 조직한 것이 바로 노동조합이다. 달갑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노동조합의 출발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노동조합은 탄생하면서부터 ‘특권을 상실하는 계급이 그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성격을 숙명처럼 갖고 있었던 것이다. 어찌 보면, 그것이 바로 노동조합의 생명력이다. 노동조합을 뜻하는 영어 단어인 ‘Trade Union’에 땀 흘려 일하는 ‘노동’의 의미가 전혀 없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숙련 노동자 출신의 중소기업자들이 노동조합의 주요 구성원이었기 때문이다.

대다수 수공업적 노동자의 특권은 생산에 기계가 투입되면서 분쇄되었으나 여전히 특권층 노동자는 존재했으니, 바로 기계를 만드는 노동자들이었다. 기계의 수요가 대량으로 요구되었으나 기계는 여전히 소수의 숙련된 금속 조립 노동자들에 의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 수천 개의 부품들이 공장에서 노동집약적으로 조립되는 기계 생산 공정은 19세기 산업혁명 완성 후에도 오랫동안 기계화 자동화되지 못했고, 숙련된 금속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의 간섭에 대해 자신들의 숙련된 기술을 무기로 능히 저항할 수 있었다.

### Taylor-Ford System의 등장

이 고숙련 금속 노동자들의 특권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었을까? ‘기계를 생산하는 기계’가 보급되거나, 기계를 생산하는 노동자를 기계처럼 부려먹는 공정이 개발되면 그들의 특권 역시 막을 내리게 될 것이었다. 금속 노동자들이 기계처럼 일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이 Taylor-Ford System이다. 그 생산 공정에 갇힌 노동자는 물결을 감히 거스를 수 없는 물방울 같은 존재에 불과해졌다. 찰리 채플린의 영화 ‘모던 타임즈(Modern Times)’에서 우리는 그 표본을 본다. 이 새로운 시스템이 노동자의 특권을 분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았다. 그러나 결국 50년의 세월과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Taylor-Ford System은 전 세계의 모든 공장을 관철했다.

### 정보화 사회의 노동자

우리가 말하는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도 결국은 이러한 변화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다. 현재 특권을 누리는 고숙련 노동자들은 누구인가? 박사 학위 노동자, 멀티미디어 산업 종사자, 언론 노동자, 금융 노동자, 조종사 등 정보화 사회는 이러한 고숙련·고학력 노동자의 대량 수요를 창출하는데, 이러한 고숙련·고학력 노동자들의 특권은 점차 빠른 속도로 소실되고 있다. 그들은 이미 착취당하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다.

현대 과학문명으로 가능해진 Pan Opticon System은 농촌의 읍사무소에서부터 대재벌의 빌딩까지 모든 사무실을 ‘투명한 유리 공장’처럼 통제한다.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이미 ‘소수 특권층 노동자’가 아니라 노동조합의 주력군이다.

선진국에서는 경찰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한 지 오래고, 판·검사, 변호사들이 노동조합 깃발 아래



모여 파업을 하기 시작했다. 우리도 이제 조만간 판·검사, 변호사들이 노동조합의 깃발 아래 모이는 모습을 보고야 말 것이다. 교사 노조, 조종사 노조를 비롯하여 최근에 설립된 공무원 노조는 그 시작에 불과하다. 노동조합은 200년 넘는 역사 동안 그렇게 변화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발전할 것이다. 미래 사회에도 노동조합은 계속 역사를 이끌어가는 기관차가 될 수밖에 없다.

### 3. 역사 발전 과정과 사회 정체성

#### 일제 식민지라는 기형적 근대화 과정

우리나라 노동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제가 왜곡된 역사 발전 과정을 강조하면 어떤 사람들은 "노동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굳이 일제 식민지 시절까지 들추어낼 것은 뭐냐?"고 닦아기도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특별한 상황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제 식민지라는 비틀린 역사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건설한 과정은 서구 자본주의 국가와 매우 달랐다.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중세 사회가 해체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시민계급이 출현했다. 해방된 농노와 몰락한 영주, 숙련 노동자와 소생산 자영업자들이 모두 시민계급으로 편입됐다. 시민계급은 성실성을 기반으로 자본을 축적했고 그 몰적토대가 시민혁명을 가능하게 하면서 자본주의 사회로 이행했다.

근대와 중세를 가르는 가장 큰 사상적 차별성은 "인간은 평등하다"는 것이 상식인 시대와 그렇지 않은 시대라는 것이다. "인간은 평등하다"는 생각이 인류의 보편적 상식이 된 것은 2백 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 이전의 훨씬 긴 역사 속에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종류가 구별되는 것이 상식이었다. 시민계급이 형성되고 시민혁명이 발생한 과정은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평등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각자에게 어떤 시민적 권리가 존중돼야 하는지를 피눈물 나게 깨닫는 과정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역사 발전 과정에서 그 소중한 체험의 기회가 박탈됐다. 우리의 계획과 전혀 무관하게 어느날 갑자기 일제 식민지라는 기형적 방식으로 자본주의 사회로 편입됐다. 양반과 상놈이라는 신분 제도의 모순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무너뜨린 것이 아니다. 해방이 된 뒤 '친일파'라고 불리던 식민지 협력자들은 사회 상층부에 진입하여 정치·인·경제인이 된 반면 제국주의 식민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해방된 조국에서 어떤 권력도 갖지 못했다. 근대 사회가 성립되고 자본주의가 확립되는 중요한 시기에 새롭게 등장한 우리의 지배 세력은 도덕적 우월성을 상실한 집단이었다. 그 불행한 비극의 전통을 이승만정부와 군사독재정권이 고스란히 이어 받았다.

한국 역사 발전의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각종 제도와 정책을 결정하고 교육과 언론을 장악한 세력이 국민들 앞에서 무언가 많은 것을 감추고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 도덕 이상의 문제를 갖는다. 근대적 합리성은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없었다. 한국 근대화의

주체였던 사람들은 대부분 노동자였고, 노동의 희생은 끊임없이 강조되고 찬양되고 교육되었지만 노동자의 권리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칠 수 없었다. 국민 대부분이 노동자이거나 그 가족으로 살아가는 사회에서 노동자의 권리와 노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형성되는 것은 부정한 방식으로 재산을 모으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정권을 탈취한 사람들에게 거의 사형선고나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기득권 세력, 또는 보수 세력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익 기반은 자본주의가 자리 잡는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흔들린 적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의 '보수'는 '수구'와 같다. 해방이 되고 전쟁이 끝나도 그들의 이익 기반은 흔들리지 않았다. 김대중 정부가 '50년만의 정권 교체'라고 아무리 큰소리를 쳐도 보수 세력이 겁먹지 않은 것은 그 때문이다. 잠시 참으면 다시 자신들의 세상이 올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 기대는 노무현 정부의 출현과 그 뒤에 이어진 일련의 정치권 개혁으로 무너진 듯 보인다. 어느 정치 평론가가 설파했듯 "노무현 대통령의 업적은 무엇보다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것"이다. 이 땅의 보수 세력은 유사 이래 처음으로 자신들의 시대가 다시는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느꼈고 그 위기의식이 이성적인 판단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이다.

#### 분단 상황이 미친 영향

분단 상황 역시 권력과 자본의 유익을 위해 철저하게 이용됐다. "교사가 파업을 해서 학교가 문을 닫고, 공무원들까지 파업을 해서 행정기관이 마비되고, 철도노조 파업으로 기차가 멈추고, 발전노조 파업으로 전기가 끊겼을 때 북쪽에서 쳐들어오면 너희들은 도대체 어떻게 할거냐?"는 위협으로 수십 년 세월 동안 노동자의 기본권을 유린했다. 분단 상황이 몇 배나 과장됨으로써 노동자들의 기본권이 유린당한 만큼 그 반대급부로 잇속을 챙겨온 세력이 줄곧 우리 사회를 지배했다.

그 왜곡되고 비틀린 역사가 어느덧 한 세기를 지났다. 일제 식민지 40년, 분단 60년, 그 와중에 군사독재정권 30년 세월을 겹치기로 겪으며 건설된 자본주의가 정상적인 자본주의가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어불성설이다. 우리 사회의 노동문제를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비틀리고 왜곡된 역사 발전 과정을 통찰할 수 있는 역사학자의 눈을 가져야 한다.

### 4. 제도권 교육의 모순

#### 제도권 교육과 언론의 역기능

시민적 권리의식을 함양하는 선진국 교육과정과 달리 우리나라의 제도권 교육에서는 노동조합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올바로 가르치지 않는다. 우리 국민들은 매스컴의 정보 전달이나 간접적인 사회 경험 등을 통해 오히려 노동조합은 뭔가 대단히 불순하거나 불온한 단체인 것처럼 인식하도록 길들여져 왔다. 선진국에서 보편화되어 있는 노동법, 노동운동, 노동조합 등에 관한 교육을 도



외시하여 교육을 통한 시민 권리 의식 함양의 기회마저도 저버렸다.

대학에 강연을 하러 가서 강연을 준비한 학생들에게 그 취지를 물으면 이렇게 답하곤 한다. “대 학생들도 국민의 한 사람인데, 노동문제를 이해해야지요.” 참 기특한 학생들이다. 그러나 그렇게 대답하는 학생들의 얼굴에서 자신들도 곧 노동자가 된다는 것을 미리 짐작하는 기색은 없다. 노동자가 되거나 적어도 노동자의 가족이 될 수밖에 없는 학생들이 노동문제를 자신과 관계없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강 건너 남의 일이라고 생각한다. 넓은 야량을 가지고 이해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의 제도권 교육과 언론이 지금까지 학생들의 생각을 그렇게 조율하고 훈련시켰기 때문이다.

방송사에 신입사원 교육을 하러 갔다. 수백 대 일의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신입사원들은 모두 명문대학교 출신일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다녔던 학교에서 수석을 놓치지 않았던 수재들이다. 어릴 때부터 경쟁에서 겨 본 적이 없는 그 신입사원들은 표정과 자세부터 보통 사람들과 다르다. 그 자신만만한 표정 속에서 자신들이 곧 노동조합원으로 활동하게 될 것을 미리 짐작하는 기색은 찾아 볼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성장하는 수십 년 세월 동안 제도권 교육과 제도 언론을 통해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 선입견을 일방적으로 주입 받았을 뿐이어서, 자신들도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에 자존심마저 상해하는 표정이 되기도 한다. 이것은 결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은 우리 사회의 역사 발전 과정이 달랐다는 사실과 함께 제도권 교육과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결과이다. 노동조합은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비정상적 상황을 해소하는 중요한 준거 틀로서의 보편타당성을 갖는다. 이제는 제도권 교육과정에서부터 노동조합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할 때이다.

### 남구만의 시조 다시 읽기

우리 국민들이 입이 닳도록 외우는 시조가 있다. 조선 후기에 영의정을 지냈던 남구만(南九萬)의 시조다.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지리 우지진다.

소 치는 아이는 상기 아니 일었느냐.

재 너머 사래 긴 발을 언제 갈려 하나니.

참고서에서는 이 시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농촌의 아름답고 목가적인 풍경을 훌륭하게 묘사한 시조입니다” “농가의 부지런한 생활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근면하고 성실하게 일하라고 강조하는 계몽적인 내용입니다” 지금도 학교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시험에 나오면 그렇게 써야 정답이다.

이 시조가 묘사하고 있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보자. 양반이 아랫목에서 느즈막이 잠을 깨었다. 해가 벌써 중천에 떠있고 종달새도 우짖고 있다. “아이쿠, 내가 늦잠을 잤구만. 그런데, 저 나이 어린

머슴 놈도 아직 자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놈이 오늘 언덕 넘어 넓은 밭을 전부 다 갈아야 하는데, 그놈도 아직 자고 있는 것은 아닐까?” 바로 그와 같은 장면이다.

같은 상황을 머슴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황토바닥에 거적때기 한 장 깔려있는 머슴방에 와서 그냥 쓰러져 잤을 것이다. 새벽이 올 때마다 나이 어린 머슴의 가장 큰 소원은 조금이라도 더 자는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머슴의 ‘관점’으로도 같은 상황을 ‘농촌의 아름답고 목가적인 풍경’이라고 한가롭게 노래할 수 있었을까? 오로지 머슴의 관점만이 옳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올바른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 한 번 서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이 시조에 대해서 백 번쯤 설명할 때 단 한번이라도 “같은 상황을 머슴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라고 가르쳐야 한다. 그래야만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가끔은 머슴의 입장에 서 볼 수도 있고, 이 세상을 올바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 중요한 사실을 천 번에 한번도 설명하지 않는다. 국민의 대부분이 머슴이거나 그 가족으로 살아가는 사회에서 단 한번도 ‘머슴의 관점’으로 우리 사회를 설명해주지 않는다. 한 줌도 안 되는 ‘양반의 관점’으로만 세상을 가르친다.

### 거북선과 이순신 장군

우리는 모두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다”고 당연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거북선을 과연 이순신 장군이 혼자 설계하고 만들었을까? 거북선을 설계하고 직접 만든 사람들은 아마 훌륭한 기술자들과 목수들과 배사람들이었을 것이다. 이순신 장군의 훌륭한 공을 깎아내리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 거북선과 이순신 장군이라는 우리의 훌륭한 역사에 대해 가르칠 때 백 번에 한 번쯤이라도, 밤을 밝히고 연구하면서 설계를 수십번 이상 뜯어고쳤을 기술자들의 노력과 망치로 두드려 그 배를 만들었을 노동자들의 땀과 수고를 같이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그 교육을 통해 역사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추는 것이 가능하다. 국민의 대부분이 기술자이거나 노동자이거나 그 가족들로 살아가는 사회에서 단 한번도 그 관점으로 우리의 역사를 볼 수 있도록 가르치지 않는다.

### 독립운동과 민족자결주의선언과 러시아혁명

31만세운동을 비롯한 우리 나라의 독립운동은 미국 윌슨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선언’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어릴 때부터 가르친다. 31운동이 일어나기 불과 1년 5개월 전에 인류 역사에 커다란 획을 긋는 사건이 우리나라 바로 위의 큰 땅덩어리에서 일어났으니 그것이 바로 러시아 10월 혁명이다. 그 혁명의 옳고 그름을 떠나, 그 사건은 세계사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이었다. 지구상의 모든 국가를 두 개의 진영으로 나누어버렸고 자본주의 시장의 45%가 한꺼번에 떨어져나갔다. 옳은 영향이든 그른 영향이든 인류 역사를 통틀어 한꺼번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 사건은 거의 없다. 그로부터 1년 5개월 후에 그 바로 밑에 붙어있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31운동이 러시아혁명의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31운동을 이야기하면서 러시아 10월 혁명을 쏙 빼 버린 채, 바다 건너 미국 윌슨대통령의 ‘민족자결주의선언’만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 미국 남북전쟁과 링컨 대통령

미국의 남북전쟁을 마치고 링컨 대통령이 그의 훌륭한 인품으로 “노예도 평등한 인간이므로 해방시켜야 한다.”고 깨닫고 노예를 해방시키기 위해 일으킨 전쟁인 것처럼 가르친다. 당시 미국의 북부지역은 급속히 공업화가 진행되어 수많은 공장들이 세워지면서 해방된 노예들이 물밀듯이 몰려와 싼 임금을 받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저임금 노동자가 막대하게 필요한 공업경제체제가 된 반면, 남부지역은 목화를 재배하는 등 수많은 흑인노예가 반드시 필요한 농업경제체제였다. 미국의 남북전쟁은 공업경제체제와 농업경제체제라는 상이한 경제적 이해관계의 충돌이라는 성격을 제외하면 설명하기가 어려워진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역사를 대체로 이렇게 설명하고 가르친다. 미국의 남북전쟁을 오로지 링컨 대통령의 노예를 해방시키겠다는 일념 때문에 일어난 전쟁처럼 가르치는 것은 옳은 교육이 아니다.

## 5. 노동자 권리에 대한 바른 이해

### 헌법과 노동기본권

노동기본권은 헌법과 법률 이전에 노동자가 갖는 당연한 권리이며 인권이다. 이것은 사회체제를 초월한 보편적·절대적 권리이며,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불변의 권리이다. 노동3권과 관련한 헌법 제33조 [근로자의 단결권 등] 제①항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규정은 국가가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음을 밝히는 것이지만, 헌법의 규정에 의해 비로소 노동자에게 노동3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헌법 제33조의 규정이 없더라도 노동자의 노동3권은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실제로 선진국들 중에서는 헌법에 따로 노동3권을 보장하는 명문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도 있다. 지극히 당연한 자연법적 권리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헌법 제32조 [근로의 권리의무 등, 국가유공자의 기회우선] 제①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더라도 인간은 누구나 살기 위해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과 같다.

다만 헌법에 노동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은 첫째, 그것이 국가의 의무임을 명시하는 것이고, 둘째, 사회 각 계급이 각각 다른 입장과 세계관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노동법의 내용을 주장하거나 해석을 달리할 때 그 판단과 해석의 기준을 헌법에 규정하였으니 근거로 삼으라는 것이고, 셋째, 전체 국민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노동조합의 이야기를 헌법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 노동3권을 법률로서 보장하는 또 다른 이유

권력과 자본이 노동조합을 그토록 혐오하면서도 어찌서 세계의 모든 국가가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자신들의 권리를 위해 투쟁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로서 보장하고 있는 것일까? 헌법으로 노동기본권을 규정하고 각종 특별법으로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길게 설명할 것도 없이, 그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노동조합의 활동이 사회 전체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최근세의 인류역사가 200년 넘는 과정을 통해 그것을 검증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이란 사회의 발전에 아무런 보탬이 안 되는 그야말로 “집단이기주의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불학무식한” 조직이라면 그 권리를 법률로서 보장할 리가 없다.

노동자들의 활동이 사회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노동자들의 지식과 교양과 인격의 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된 억압구조가 노동자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강제하기 때문이다. 좀 거창하게 말하면, 고대사회 ‘해방 노예’의 관점이 옳았고, 중세사회 ‘해방 농노’의 관점이 옳았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들의 관점이 바로 역사의 진행 방향이었던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노동자가 가지는 계급적 성격은 한 마디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 노력할지라도 사회 전체를 유익하게 한다"는 것이다. 다른 계급은 그러한 특권을 가질 수 없다. 예를 들어, 어느 자본가가 자신과 가족만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그 노력은 사회 전체를 해롭게 하고 역사를 후퇴시킨다. 신문을 장식하는 대형 사건들은 대부분 권력과 자본의 이기적 이익을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그 파업의 목적이 오로지 “내 일자리를 지키겠다”거나 “한 푼 더 받겠다”는 ‘집단이기주의’였다고 해도, 결국은 그 노력이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고 경제구조를 튼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하물며, 노동조합이 사회 개혁을 위한 이타적 목표들을 추구하는 바에는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다.

노동조합이 없다면 이 세상은 소수의 특권을 누리는 세력들만의 이해가 무자비하게 관철되는 심각한 불평등구조를 벗어날 방법이 없다. 노동조합은 자신들이 소속돼있는 사회의 불평등구조 때문에 발생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가장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노동조합은 지금까지 20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그 역할을 수행해왔다. 사회의 특권세력이 노동조합을 혐오하는 이유는 그 때문이다. 우리 사회 ‘악의 축’들에게 노동조합은 가장 확실한 ‘적’이 되는 것이다.

대우자동차 노조의 파업이 "정부와 기업의 잘못된 구조조정 정책에 썩기를 박는다"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았거나, 방송 노동자들의 파업이 "민주언론 쟁취"라는 고상한 목표가 아니라 오로지 "일자리를 지키겠다"거나 "한 푼 더 받겠다"는 '집단 이기주의'였다고 해도, 그러한 노력이 결국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고 경제구조를 튼튼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노동자들의 '사익'이 모여 결국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고 경제구조를 튼튼하게 만드는 '공익'이 되는 것이다. 물론 노동자들이 오로지 자신들의 이기적 이익만을 추구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들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노동자 일반의 선택'이 '권력과 자본 일반의 선택'보다 우선하는 역사적 당위성을 갖는다는 것이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사회적 범죄행위처럼



보는 시각이 팽배한 것은 정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 사회문제에 대한 구조적 관점

역사와 사회를 보는 올바른 관점은 반드시 지식과 교양과 인격의 수준과 비례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사회 구조의 문제이다.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된 억압구조가 노동자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강제하고 있는 것도 그 예 중의 하나다.

어느 청각장애인이 20년 동안의 피눈물나는 노력 끝에 세계적인 타악기 연주자가 되었다는 감동적인 내용의 성공담들이 일방적으로 강조되는 분위기 역시 뭔가 석연치 않다. 우리 사회의 모순된 억압구조를 개인의 불성실로 은폐하는 불순한 시도가 그 글에 숨어있는 것은 아닐까... 장애인들의 눈물겨운 노력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미담을 읽으면서 인생의 실패자들은 “당신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당신의 게으름과 무능과 불성실 때문”이라는 질타를 듣는다. 그 사람들에게 돌아갈 몫을 숨어서 챙긴 더러운 세력 때문에 자신들의 불행이 시작되었다는 원인을 깨닫기 어려워진다.

작년 프로야구 개막경기 시구 장면은 눈물겨웠다. 양쪽 다리가 없는 장애인 소년이 의족을 착용하고 미국인 양부모가 지켜보는 가운데 공을 던졌다. 언론은 이 아름다운 장면을 앞다투어 보도했고, 보는 이들은 그 사진만으로도 가슴이 젖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신문 사회면 구석에는 우리나라 어느 인텔리 여성이 장애인 친자식을 목 졸라 살해하고 구속되었다는 기사가 실렸다. 어떤 지식인들은 이 두 가지 일을 놓고 개탄을 한다. “미국의 부모는 외국의 장애인 소년도 데려다가 자식으로 키워주는데, 한국의 비정한 어머니는 친자식을 장애인이란 이유로 목 졸라 살해하다니...” 그러나,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미국 사회와 한국 사회가 장애인 자녀를 키우는 부모가 살아가기에 엄청나게 다른 환경과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이다.

장애인이거나 노동자들처럼 죄 없이 고통을 당해야 하는 사람들의 문제를 올바로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우리 사회를 조금씩 평등한 구조로 바꿔가는 것이다. 그런데, 세상을 평등한 구조로 바꾸는 일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들이 역경에 처한 장애인과 노동자들에게 계속 “용기를 가지고 노력하라”고 충고한다. 이렇게 “불굴의 노력으로 성공하라”는 충고는 어릴 때부터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훈련받아온 미덕이다. 노력하는 사람은 마침내 성공할 수 있다는 격언이 온 나라를 거의 도배하듯 덮고 있다. 일주일에도 몇 번씩 들리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화장실에도 그런 충고는 어김없이 눈에 뜨인다. “고통이 클수록 영광도 크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부지런함을 배우라”, “어둠을 뚫고 솟아나 세상의 빛이 되시오.” 참으로 산뜻하고 멋있는 표현일지 모르나, 실제로 그런 일은 우리 사회에서 거의 불가능하다. 개인의 노력만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는 사람들로 하여금 문제의 본질을 보지 못하게 한다. 현재 많은 것들을 부당하게 누리고 있는 사람들의 이익이 계속 보장될 뿐이다.

사회적 약자인 다수의 선택이 옳은 이유는 구조적 관점으로만 이해될 수 있다. 개인의 인격과 교

양과 지식의 수준과 무관하게 그들의 역사적 선택이 옳은 이유는 사회의 모순된 억압구조가 그들에게 올바른 선택을 강제하기 때문이다. 숲에 보면 키가 큰 나무가 있고 키가 작은 나무도 있다. 키가 큰 나무는 그 나무의 품성이 아무리 훌륭해도 키가 작은 나무에게는 햇볕을 가리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자본주의 사회의 자본과 노동의 대립 구도가 바로 그것이다. 키 작은 나무가 공평하게 햇볕을 받으며 살기 위해서는 자기의 키를 키우거나 키 큰 나무의 햇볕을 가리는 가지를 쳐 낼 수밖에 없다. 키 작은 나무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숲의 구조가 더욱 평등해지는 방향으로 노력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수천년 인류 역사의 진행 방향이다.

## 6.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보는 눈

### ‘직접고용’과 ‘정규직’이라는 원칙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은 어디까지나 ‘직접 고용’ 그리고 ‘정규직’이다. “중간착취 배제” “차별적 처우 금지”에 관한 조항들이 바로 그 원칙들을 담고 있다. 노동자 파견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근로기준법 원칙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비판이 가장 중요하게 제기됐고, 따라서 파견 형태의 고용은 노동자 파견법이 처음 출발할 때부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라는 성격을 갖고 있었다. 파견 기간이 2년이다 또는 3년이다, 파견 기간이 끝나면 직접 고용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들이 법에 규정된 이유는 그 때문이다. 비정상적 고용 형태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존속하게 되면 사회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프랑스 등 유럽에서는 질병·출산·휴가 등 결원이 생겼을 때에만 비정규직 노동자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히려 고임금을 받는 경우가 많다. 남보다 불리하게 단기적으로 고용되는 것이니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이란 개념은 이런 취지를 살리자는 것인데, 기업으로서는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니 여러 가지 논리로 반대할 수밖에 없다.

독일에서는 건설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 노동자 파견이 가능한 거의 유일한 나라지만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엄격하게 지켜져 비정규직 노동자라 할지라도 특별한 불이익 없고, 전형적인 시장 경제주의 체제인 미국도 파견 노동자를 고용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대형화되어 교육과 사회복지 혜택이 거의 동등하다.

기업은 “고용 증대를 위해 파견 관련 규제를 풀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파견업종 확대가 순리인 것처럼 주장한다. 그러나 세계화 바람이 급격하게 불던 90년대에 비정규직 노동자 규모를 확대했던 대부분의 나라들이 2천년대에 들어선 뒤에는 그것이 국가 경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파견 노동자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 수를 줄이거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고 있다.



## 비정규직 관련 법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해 정부와 기업이 주장하는 정책들이 기업의 단기적 이익이나 경영자의 사욕 추구, 또는 그것을 위해 일하는 것이 자신의 직무인 사람들에게만 유익할 뿐, 국가 경제 전체에는 해로운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닌지 곰곰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일관되게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구되는 정책들은 사회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켜 국가 경제에 해로움을 끼칠 수 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경상수지흑자와 수출액 기록 경신이 거의 매달 이루어질 정도로 역사상 유례없는 수출 실적이 달성되고 있음에도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에는 기업 부설 연구소들조차 동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의 이익이 언제나 나라 전체의 이익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노동계의 주장이 노동자에게 유익할 뿐 아니라 국가 경제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물론 함께 따져봐야 한다.

정부와 기업의 주장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지금보다 더욱 증가시킬 수밖에 없고 그 차별을 공고하게 하는 것이라면(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은 그렇다는 것이고 그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아마추어리즘에 불과하다는 것이 노동부장관 즉,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한 정책을 추구하는 것은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한국 경제 전체에도 해로울 수밖에 없다.

비정규 노동자를 양산할 것이 분명한 법안 내용에 반대하는 노동자들과 사회 불평등구조가 더욱 심화되는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그 차별을 공고히 하려는 정부와 기업의 입장 중에서 어느 쪽의 주장이 우리 사회의 장기적 발전에 유익한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

## 대기업 강성 노조와 노동 유연성

기업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 해결의 책임을 대기업 강성 노조에 돌리고 있고, 정부의 시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러한 주장들은 우리나라 대기업 노조가 대부분 지나치게 강성이어서 부당한 특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경영자들이 “한국에 오기 전에는 언론의 보도를 통해 한국 대기업 노동조합들이 투쟁적이고 과격할 줄 알았는데 와서 직접 겪어보니 사실은 그렇지 않고 상당히 합리적이었다.”고 거듭 강조하는 사실과 - GM 대우의 ‘닉 라일리’, 한국도요타의 ‘오기소 이치로’, 주한미상공회의소 명예회장 ‘제프리 존스’ 외에도 그와 같은 발언을 하는 외국인 CEO들은 많다 - 우리나라의 노동유연성이 OECD 가입국 등 여러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결코 낮은 편이 아니라는 신뢰할 만한 연구 결과들을 정부와 기업은 애써 외면한다. 대기업 강성 노조는 있다고 해도 소수에 불과한데 그 피해가 지나치게 과장되는 측면이 있다.

대기업 노조의 이익 추구 행위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더욱 열악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불러오는 현상이 전혀 없거나, 대기업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나 몰라라 하는 것

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노동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시키면서도 절반 정도의 대우밖에 하지 않는 비윤리적 행위를 ‘노동 유연성’이라는 개념으로 정당화하는 기업의 행태에 비하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익 추구 행위는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의 본질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대한 정치적 산수

정부가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현안대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이 반드시 기업의 입장에 휘둘리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정부로서는 비정규 노동자가 많아진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결코 불리할 것이 없는 상황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한 화살을 기업이나 정부에 돌리기보다 상대적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돌리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과거사 규명과 친일 잔재 청산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글을 썼더니 그 글에 대해 “노동문제연구소장이라는 놈이 비정규 노동자들의 권리를 향상시킬 생각은 않고 한가하게 역사나 이야기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불행하게도 그러한 비난에 많은 사람들이 즉흥적으로 공감하는 것이 현실이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아무리 많아져도 기업과 정부로서는 자신들이 받아야 하는 비난의 하중이 늘어 나지 않을 뿐 아니라, 비정규 노동자가 많아질수록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동운동이 더욱 고립될 뿐이니, 정부로서는 정치적으로 손해를 볼 일이 없다는 ‘산수’를 하지 않았을 리 없다.

##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이유

미국 ‘에모리’ 대학교에서 원숭이를 대상으로 평등의식과 정의감에 대한 실험을 한 논문이 ‘더 네이처’에 실렸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에게 가뉘 키워져 일체의 학습과 교육의 기회를 차단당한 원숭이들에게 먹이를 매일 똑 같이 주다가, 몇 마리에게만 더 많거나 더 맛있는 먹이를 주기 시작하면 나머지 무리 중에서 자신의 먹이를 땅에 패대기치거나 사육사에게 내던지며 그 불평등에 저항하는 원숭이들이 반드시 나타난다는 것이다.

4 개월 동안 진행된 그 실험에서 얻어진 결론은 “평등의식은 학습의 결과가 아니라 진화돼온 본능적 특성”이라는 것이다. 수만년 동안 자연 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유지해온 영장류에게 그러한 본능이 형성된 이유가 무엇일까? 평등을 구현하는 것이 그 공동체가 자연 속에서 생존하며 번성하는데 유익하기 때문이다.

“어떤 경제학도 휴머니즘보다 위에 있을 수 없다”는 말이 있다. 다수의 가난한 사람들이 인간답게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경제 정책이란 뜻이다. 이렇게 “약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명제가 인류 사회에 확립된 것은 단순히 “사회적 약자에게도 인간으로서 품위를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행복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고전적 휴머니즘의 차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공동체 전체의 발전에 유익하기 때문이다. 오랜 역사 진화 과정 속에서 그러한 도덕적 원칙들을 지키는 것이 인류 공동체의 유지 발전에 유익하다는 것을 체득했기 때문이다. 눈앞의 이익 때문에



나라의 백년대계를 거스르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 7. 노동자와 역사

### 역사 발전의 방향

선사시대를 빼고 실증적 기록이 남아있을 때부터 따지면 인류의 역사는 대략 얼마나 되는 것일까? 성경까지 역사적 기록으로 인정할 경우 기독교의 출발이 되었던 출애굽 사건이 기원전 2800년 경이었으니 모두 5천년쯤 되었다고 본다.

5천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인류역사는 신기할 정도로 한쪽 방향을 진행되었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만 흐르는 것처럼 인류역사도 줄기차가 한쪽 방향을 지향했다. 그 방향은 5천년 동안 바뀌지 않았다.

고대 사회에서는 노예가, 중세 사회에서는 농노가 노동을 담당했다. 그들의 생활이 얼마나 어려웠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오늘의 주제가 아니니 생략하자. 다만, 고대의 노예는 잘게 부숴져서 연못의 붕어밥이 되기도 했고, 중세의 농노는 결혼 첫날밤 신부와 함께 잘 수 있는 권리를 영주에게 받쳐야 했다는 것 정도만이라도 알아두자. 그 시대에는 그 일이 지극히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보편적인 가치관이었다.

고대 노예의 생활에 비하여 중세 농노의 생활은 한결 그 자유와 권리가 확대되었고, 중세의 농노에 비하여 자본주의 사회의 노동자 생활 역시 그 자유와 권리가 크게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그렇게 노동을 직접 담당했던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가 크게 확대되어 온 것에 비하면 중세의 영주는 고대의 귀족보다 그 자유와 권리가 오히려 축소되었고, 자본주의 사회의 자본가 역시 중세의 귀족보다 그 자유와 권리가 축소되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며 사는 계급이 있고, 편하게 놀고먹는 계급이 있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는 사회 계급은 그렇게 나뉘어져 있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는 그 시대의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계급의 권리와 자유가 점차 확대되는 방향으로, 편하게 놀고먹는 계급의 권력은 점차 축소되는 방향을 진행되었다. 그 방향이 5천년 동안 바뀌지 않았고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러한 역사발전의 방향을 "역사는 담당 주체의 세력 확대 과정이다"라고 표현한다. 그 시대의 노동을 직접 담당하고 있는 주체의 세력이 점차 확대되어 가는 과정이 역사의 진행 방향이라는 뜻이다. 그 진행 방향은 당연히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신자유주의에 자신있게 반대할 수 있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인류 역사가 진행되는 방향에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노예제도가 문명사회에서 철폐될 수밖에 없었던 것과 똑 같은 맥락으로 신자유주의는 몰락할 수밖에 없는 이데올로기이다. 히틀러 같은 독재자 나타나면 역사가 잠시 수십년쯤 뒤로 후퇴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지금은 신자유주의라는 망령 때문에 역사가 잠시 주춤거리고 있을 뿐인 것이다.

### 역사 담당 주체들의 피나는 노력

노동 계급의 자유와 권리가 확대되는 과정에는 그 '주체'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 역사의 강물은 그렇게 '밀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도도하게 흐르는 것이 가능했다. 노동자가 역사를 똑바로 이해하는 것은 역사의 강물을 밀고 가는 활동에 자신감을 준다. 지금은 고통스러울지라도 끝내는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노동자의 인생을 보람있게 채우는 데에 기여한다. 역사와 사회를 이해하는 올바른 철학이 우리를 내딛는 발걸음에 힘을 더하는 것이다.

## 8. 노동운동과 한국 경제

### 갈수록 가난해지는 노동자

노무현 대통령이 '대기업 노동자 기득권'을 비난하기 시작한 이후 우리나라 사람치고 "대기업 노동자들이 지나친 고임금을 받고 있으며, 고임금이 한국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같은 맥락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상대적 고임금을 받는 교사들이 만일 임금인상 투쟁을 한다면 거의 매국노 취급을 당할 지경이다. 그와 같은 정서가 과연 옳은 것일까?

"고졸 생산직 15년차가 연봉 5천만원을 받는다."고 지탄의 대상이 됐던 바로 그 대기업 노동자가 결혼 10년만에 아파트를 한 칸 마련하고 사람들을 집들이에 초대했다. 저녁식사가 끝나고 차를 한 잔 마시는 시간에 그 노동자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결혼한 지 10년쯤 된 그 노동자가 10년 전 신혼 때에는 출근할 때 안해가 따라나와 "여보, 일찍 들어와"라고 인사를 했는데, 요즘 일찍 집에 들어오면 안해의 곱지 않은 눈총을 받는다는 것이다. 며칠 전에도 그 노동자가 좀 일찍 퇴근해 들어왔더니 안해가 "집안에 뭐 꿀 항아리라도 감춰놓은 거 있어? 왜 연장근로도 하지 않고 벌써 들어와? 해도 떨어지기 전에..."라고 반농담으로 말하더라는 것이다.

그 노동자의 임금은 10년 동안 산술적으로 몇 배가 인상됐을 것이다. 그러나 10년 전보다 행복해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 임금이 인상돼도 노동자의 삶이 행복해지지 않는 기묘한 이유가 무엇일까? 몇 년 전 대우경제연구소가 '한국경제연구'라는 프로젝트 결과를 발표했을 때, 한 중앙일간지는 사회면이나 경제면이 아닌 1면 톱기사의 제목을 "소득 늘었으나 빈부격차 더 심해져"라고 뽑은 적이



있다. 노동자들의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보다 우리 사회 빈부격차가 벌어지는 속도가 더 빠르다는 것이다.

그와 비슷한 내용을 LG경제연구원에서도 발표했다. 수출이 급신장되고 있음에도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과거와 비교해서 소득이 아무리 많아져도 같은 기간에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졌다면 결과적으로 노동자는 더 가난해진 것이나 다름없다.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이 아무리 많이 인상돼도 부동산 투기를 하는 사람이나 이자 소득자의 소득이 늘어나는 속도를 따라잡을 수는 없다. 20년 넘게 일한 노동자가 얻은 소득과 부동산투기를 한번 잘해서 벼락부자가 된 사람이 벌어들인 소득을 비교해보면 그 실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직장인들은 거의 없다. 교사나 공무원은 물론 대기업 관리직이나 임원이라고 해도 이 기형적 구조로부터 도망칠 수는 없다. 사회불평등구조가 심화되는 이 현상을 바로잡지 못하면 우리 경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 ‘수출’이나 ‘투자’보다 중요한 ‘소비’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이 ‘성장잠재력 변동요인 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소비’의 성장기여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소비’의 부가가치 유발계수가 ‘투자’나 ‘수출’보다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통계의 의미는,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수출이나 투자보다 소비가 경제를 성장시키는 효과가 훨씬 크다는 뜻이다. 수출이 아무리 늘어도 국민들이 쓸 돈이 없으면 우리 경제는 발전할 수 없다.

부유층의 소비에는 한계가 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도 하루에 밥을 세 끼 이상 먹거나 비싼 모피코트를 몇 겹씩 겹쳐 입고 다니거나 골프를 동시에 여러 곳에서 한꺼번에 즐길 수는 없다. 건전한 소비는 국민 전체에서 골고루 나와야 한다. 소수의 부자가 빨리 많은 돈을 버는 것보다, 직장인들의 소득을 높이는 것이 건전한 소비를 창출하는 올바른 지름길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노동자들의 임금이 인상되는 것은 우리 경제에 절대적으로 유익하다.

물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은 더욱 빠른 속도로 인상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이 철폐돼야 한다.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을 줄여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격차를 좁히는 방식은 기업의 수출이 줄어드는 것보다 더욱 우리 경제에 해로운 결과를 초래한다. 더불어, 쉽게 돈 버는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하는 속도를 붙들어야 한다. 아파트 하나로 한 달 사이에 7억의 소득을 올리는 사람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막아야 한다.

### 경제에 유익한 영향을 미치는 고임금

‘시간당 임금’이나 ‘평균노동비용’을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 노동자의 임금이 지

나친 고임금이 아니라는 것을 수치상으로 확연히 알 수 있다. 노동자의 고임금이 경제성장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말은 거짓이다. 우리나라 부동산의 ‘고’가격이나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고’이자율이 한국 경제에 미쳤던 나쁜 영향에 비하면, 우리나라 노동자의 ‘고’임금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나쁜 영향은 그야말로 무시해도 좋을 정도로 작다. 조 순 ‘교수’의 ‘경제학원론’을 한 번만 읽어 봐도 쉽게 알 수 있는 경제학의 ABC이다.

노동자 임금이 인상되면 경영자들에게는 경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더 큰 노력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발생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과도한 임금인상이 원인이 되어 도산한 기업은 없었다. 부실 경영의 원인은 대부분 다른 곳에 있다. 노동자의 적정 임금 수준을 유지하면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지금 우리나라 기업 경영자들이 시급히 해내야 할 일이다. 다른 부가가치 생산 능력이 없어 오로지 노동비용을 줄이는 것만으로 경쟁할 수밖에 없는 기업은 한국 경제에 유익하지 않다. 그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무능한 경영자이다.

### [참고자료]

인권교육이란 무엇인가?

What is Human Rights Education?

- 낸시 플라워스(Nancy Flowers)

(Published in A Survey of Human Rights Education(Bertelsmann Verlag, 2003).  
Reprinted with permission by HREA.

도입: 생략

I 부. 갈등하는 정의(definitions)의 문제

A. 정부 기구들의 정의

정부기구들의 성명에 담긴 인권교육의 공식적 정의는 부족하지 않으며, 이러한 공식적인 정의들의 발전은 인권담론이 반세기동안 변화해온 방식에 대한 매우 유익한 정수를 제공한다.<sup>1)</sup>인권법과 실천의 다른 측면과 마찬가지로, 인권교육에 관한 초기의

1) For a summary of these changes see Upendra Baxi's, "HRE the Promise of the Third Millennium," in Human Rights Education for the 21st Century(Philadelphia: Univ. of Pennsylvania, 1997) 142. See also the analysis by Claire Thomas and Anna Henry, Human Rights Standards and Education in Human Rights, Index: Pol32/04/96(London: Amnesty International, 1996)



성명은 유엔헌장이나 세계인권선언에서처럼 고무적이지만 담백한 일반화이다.(예를 들어, “인권에 대한 존중을 신장하고...”) 그러나, 지난 50여년을 거치면서 이러한 성명은 “인권에 대한 존중”이 무엇이며, “가르치고 교육하는 것”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며, 인권교육의 내용과 방법론이 무엇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보다 명확한 표현을 지향해왔다.

정부의 정의는 목표와 성과에 대한 정부들의 헌신, 특히 질서와 국가 자체를 유지하는 것이 주된 특징이다. 법적 문서에 대한 정부들의 지지 속에서, 인권교육의 “권리”적 측면을 강조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를 만든 사람들이 대개는 교육을 보조적으로 여기고 대중교육에 전혀 익숙치 않은 외교관이나 법률 전문가들이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1. 정부의 정의는 평화, 지속성, 사회질서를 창조하는 인권교육의 역할을 강조하고 사회적으로 혼란을 일으키는 행동과 태도에 반대한다. 따라서, 평화, 민주주의, 발전, 관용, 사회정의같은 단어가 그들의 성명에서 반복된다.

예를 들어, 1974년 인권교육에 대한 유네스코 권고는 이렇게 말한다.

“국제이해”, “협력”, “관용, 존중과 연대의 태도”를 증진하고;

“인권과 발전, 평화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건설하고;

예를 들어, 1985년 “학교에서의 인권 가르침과 학습”에 대한 유럽의회권고는

“민주주의 원칙”, “다원적 민주주의, 관용, 기회의 평등”, “갈등의 비폭력적인 해결”에 대한 긍정을 장려한다.

“외국인혐오의 태도, 테러리즘, 인종주의, 편견, 선입견, 차별”을 반대한다.

예를 들어, 1993년 세계인권대회의 선언은

...사회간의 안정적이고 조화로운 관계의 증진과 성취, 상호이해, 관용, 평화 육성에 필수적인 것으로 인권교육을 고려한다.(78항)

2. 정부의 정의는 국가들과 정부간 기구들의 협상과 회의의 산물인 국제적·지역적 문서들에 대한 학습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1993년 세계인권대회선언문은-

국제인권법과 지역인권법에 규정된 것처럼,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보편적 기여를 강화할 것을 목표로 한 공통된 이해와 인식을 달성하기 위하여 평화,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정의를 포함해야 한다.(80항)

일부 정부 성명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인권규약에 규정된 것으로만 한정하는 것으로 보인다(특히 1974년 유네스코 인권교육에 관한 권고, 1978, 1991, 1992년에 재확인됨). 그러나, 대부분의 정부 성명은 그렇게 제한적이지 않으며, 국제적, 지역적, 국가적 권리 문서의 총체 속에 규정된 권리의 완전한 범주를 인정한다.

3. 정부들의 정의는 점차 인권교육이 적절하게 수행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국가의 책임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1981년 아프리카 헌장의 25조는 이점에 대해 특히

선명하다:

이 헌장의 당사국들은 가르침, 교육 및 출판을 통하여 헌장에 포함된 권리와 자유의 존중을 증진시키고 보장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자유와 권리는 물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이해시키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책임 또는 “의무”는 명백히 의미하는 바는 국가가 이러한 “가르침, 교육, 출판”이 수행되는 방식의 관리를 보장해야 하며, 배워야 할 “권리와 자유”를 해석하며, 이러한 교육의 성과가 그 목적에 맞도록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가들이 인준하고 선포한 정의들 중에서 가장 포괄적인 것은 1994년 유엔인권교육 10년 선언문과 그 행동계획이다. 이것은 인권교육의 새롭고 광범위한 이해를 나타내며, “보편적인 인권의 문화”(“인격과 인간 존엄성 인식의 완전한 발전”과 성평등에 대한 강한 선언을 포함한다)를 말하는 것으로 인권교육의 개념을 확장하고 있다.

유엔인권교육10년의 정의는 “완전한 발전”과 “인간존엄성의 인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이해하려는 도전, 그리고 상호의존성과 “민주주의, 발전, 인권의 상호 강화하는 성격”에 대한 인정에 있어서 진취적인 것이다. 그러나, 인권교육10년의 창조적 시사에도 불구하고, 행동계획은 성과에 초점을 맞춘 채로 있다. 정부들의 다른 정의와 마찬가지로, 인권교육10년은 인권교육의 가치가 사회적 선(social good)을 위한 전략적 도구성에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 B. 민간단체들의 정의

민간단체들의 정의는 정부기구들의 것과 마찬가지로 강력하게 성과를 강조한다. 하지만, 예상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민간단체들이 아주 다른 성과를 추구한다. 민간단체들은 “사회적 선”을 정의하고 인권교육의 목표를 결정하는 정부들의 특권에 도전한다. 정부들이 승인한 인권교육 노력은 방지적인 경향이 있고, 민간단체들의 그것은 변화시키는 것으로 인권교육을 사회변화의 도구로 여긴다.: 정부 권력을 제한하는 것, 국가 권력으로부터 민중을 보호하는 것, 일부 경우에는 민중으로 하여금 국가권력을 장악하도록 하는 것. 인권교육을 다양한 사람들에게 전하려는 열성에 있어, 민간단체 활동가들은 학자들보다 훨씬 더 인권교육의 “교육”적 성격에 헌신한다.

1. 민간단체들의 정의는 취약한 집단으로 하여금 자기자신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인권교육의 잠재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침해를 강조하고, 억압자들에게 도전한다. 민간단체의 정의는 권력, 권한강화, 갈등, 보호, 방어, 피억압자와 억압자, 피해자, 침해 같은 단어들을 반복하여 말한다.

예를 들어,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은 1987년 인권교육에 대한 입장을 나타내는 문서를 발행했다. 여기서 인권교육의 정의는:

인권의 적절한 보호는 개인들이 자신들이 권리가 무엇인지 어느나에 달려있다....교육은 또한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을 포함한다. 인



권교육이 성공적으로 사회 속에 스며든다면, 침해 예방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따라서 인권교육은 인권침해에 대한 유용한 방패이다.<sup>2)</sup>

2. 침해에 반대하고 침해로부터 보호하는데 초점을 두는 데에 덧붙여, 많은 보다 진보적인 풀뿌리 민간단체들은 역사적으로 부인돼온 권리들을 주장 또는 요구하는 수단으로서 교육을 강조한다. 권리에 대한 지식, 분석 기술, 정치적 활동을 종합하여 권력에 맞서는 이들의 논조는 종종 적대적이다. 예를 들어, 1992년 남아시아 인권교육자 훈련 워크숍의 인권교육 정의는:

[인권교육 속에서]...민중은 자주적 방식 속에서 자신의 발전 주체로 만들어진다. ...가난한 사람들의 집단이 자신들의 지역상황과 문제를 분석하고 근원적인 요인을 발견하려 한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스스로 계획하고 결정한다...토론하고 분석함으로써 그들은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 알게되고, 특히 그들이 정부로부터 받아야만 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 알게된다. 자신들의 제한된 힘을 통해 그들은 자신들에게 당연히 주어져야 하는 것을 획득하기 위한 압력 행동을 조직할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불의는 훨씬 더 복잡하여 불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하고 아는 것은 어렵다. 사회분석이 요구되며, 사회분석은 인권침해를 발견하기 위한 사회정의사업과 발전에 있어 주요 도구이다.<sup>3)</sup>

흔히 이런 식의 보다 급진적인 성명들은 사회적 불안과 조직적인 권리 침해 상황에서의 인권교육 노력들로부터 나온다. 예를 들어, 1991년 남아공에서 개발된 교과서인 Human Rights for All은 위기가 발생하려 한다는 것을 분명히 예견하고 있고 인권교육이 그러한 변화를 촉진하고 갈등을 방지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인권교육은]...인권문제를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우리는 우리 모두와 관계 있는 인권문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정부와 국민이 침해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제공하려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인권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sup>4)</sup>

대조적으로, 1994년 필리핀의 정의는 1980년대를 막 거친 국가의 혁명 경험을 반영하고 있다:

...자신의 경험 세계를 해석하는 자연스런 방법으로서 자신들에게 전달된 것을 무엇이건 비판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피해자들과 예상되는 피해자들의 의식을 높이는 일이 요구된다. 권력 없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곰곰이 뜯어볼 기회가 제공될 때에야, 그들의 객관적인 조건이 공부의 내용이 될 때야, 자신들의 생각을 지배권력의

2) Amnesty International, Human Rights Education: Amnesty International's Position Index: Pol 32/03/8(London: Amnesty International, 1987)

3) Richard W. Timm, Training of Trainers in Human Rights(Bangladesh: South Asian Forum for Human Rights, 1992) 6.

4) David McQuoid-Mason, Edward L. O'Brien, Eleanor Greene, Human Rights 랙 All: Education toward a Rights Culture(Kenwyn, South Africa: Juta & Co., 1991)7.

부당한 영향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인권교육자들의 만만치 않은 과제이다.<sup>5)</sup>

3. 많은 민간단체들이 사용하는 인권교육에 대한 정의는 빈곤, 권력과 기회의 조직적인 불평등과 같은 부정적인 힘을 초래하는 조건을 분석하고 근절하기 위한 학습을 강조한다. 혁명적인 Paolo Freire의 페다고지는 자각을 이끄는 분석과 비판적 검토에 대한 이러한 강조 속에서 분명하다. 앞서의 세 개의 정의는 이러한 프레이리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다. Shulamith Koenig의 정의도 마찬가지다:

인권교육은... 성관점(gender perspective)을 갖고 학습자들과 더불어 비판적 사고와 구조적인 분석을 이끌어내는 학습과정이다. ...학습자의 생활과 관련된 정치적·시민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관심사에 대해 인권의 총체적인 구조 속에서 자신들의 상황에 대한 분석을 학습하는 것이다...인권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낳고...우리의 생활을 좌우하는 결정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인권을 주장하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다.<sup>6)</sup>

이러한 인권교육의 측면은 정부들의 성명에는 전적으로 부재한 것이다. 정부들은 자신들의 이해를 반드시 고려한다. 정부의 이해는 공유하는 권력을 희생하기까지 하면서 권력에 머물려고 하는 것과 더불어 시작된다. 정부가 진보를 요구하고 온건한 증진을 이행할 수 있을지 모르나, 오직 급진적으로 새로운 정부만이 급진적인 변화를 인준한다. 이러한 차이가 인권교육의 개념에 있어서 주요한 분기점을 구성한다.

4. 비국가 행위자의 점증하는 중요성을 인정하고, 새로운 권력 모델을 낳고, 점점 더 세계화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국가 주권의 침식에 대응한다는 점에서 민간단체들은 흔히 정부들보다 앞서있다. 더욱이 민간단체들은 국가주권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고려로서 인권을 중요하게 평가한다. 따라서 많은 민간단체들에게 인권교육의 목적은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만이 아니라 다른 권력의 원천(예를 들어 초국적 사업과 비국가 행위자들)에도 점차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회변화를 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와 그 부재에 대해 교육하는 단체인 Center for Human Rights Education(CHRE)의 정의는:

인권교육을 통해 우리는 변화를 창조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인 가치를 얘기할 때 우리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다고 확신함으로써 기업, 미디어, 우리의 정부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를 행사할 수 있다.<sup>7)</sup>

5. 이러한 주장은 인권교육에 부여된 엄청난 열망과 희망의 무게를 보여주는 한편 인

5) Amnesty International-Education for Freedom, Shopping List of Techniques in Teaching Human Rights(Quezon City: Amnesty International-Philippine Section, 1994) 17.

6) Shulamith Koenig, on the Human Rights Education Associates Listserv, www.hrea.org, 1 January 2002.

7) National Center for Human Rights Education, Bringing Human Rights Home: Linking Individual Dignity with Mutual Destiny: 1996-2000 Report of the National Center for Human Rights Education(Atlanta: National Center for Human Rights Education, 2000) 3.



권교육에 잠재적인 위협이기도 하다. 한편으로, 그것은 인권이라는 좋은 소식을 모든 사람에게 전달해 그들의 삶 속에서 현실이 되도록 만들려는 일종의 사절로서의 열망을 말하고 있다. 이런 종류의 인권교육은 일상 생활 속에서 인권을 인식하도록 돕는 것에 관한 것이다.

-중략-

다른 한편, “기업, 미디어, 우리 정부에 대한 민주적인 통제”를 약속하는 인권교육의 정의는 인권교육이 생산할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약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인권 없이 세계평화나 평등을 성취할 수 없다. 하지만, 인권교육이 기업을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인권교육이 세계평화를 이끌거나 민주적 체도를 건설한다는 일부 정부기구들의 약속과 마찬가지로 환멸을 초래하는 것이다. 확실히, 인권교육은 이러한 이익을 증진시키지만, 인권교육을 그 성과에 의해 정의하는 것의 문제는 영감과 동기부여를 현실적이고 성취가능한 것과 균형을 잡는 것, 이상과 현실간에 균형을 잡는 것이다. 물론 인권교육은 둘 다를 해야한다.

### C. 교육학자들의 정의

1. 정부나 민간단체들의 정의와는 다르게, 학자들과 교육사상가들의 저술은 강조점을 성과로부터 그러한 성과를 창조하고 전달하는 가치로 옮겨 두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내용과 방법론에 대한 이들의 권고는 보편적 적용을 위한 윤리적 구조로서의 인권교육의 개념에 기반해 있다. 이들의 정의는 원칙, 규범, 기준, 가치, 도덕적 선택 같은 단어들을 강조한다. 인권의 원칙들은 강제 없이 학습자들에 의해 이해되고, 강화되고, 표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있어 세심하지만, 대부분의 사상가들이 인권을 인간의 욕구에서 나와 모든 인류에 적용되는 자명한 가치 체계로 간주하는 것은 분명하다. 이들 집단에게 있어서는 인권교육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인간”에 있다. 이 집단은 훨씬 사려깊고 학문적으로 접근하지만, 대개가 정치적 현실에 대한 경험(외교관과 법률 전문가들의)이나 “거리에서 지내는 지혜”(활동가들의)가 부족하다.

예:

·인권교육의 구조는 원칙과 기준에 근거한 사회교육으로서 계획된다...도덕적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 문제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는 능력, 시민행동의 민주적 과정을 고안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한-다른 말로 하면, 도덕적이고 지적인 강화를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생명력이 원칙에 대한 숙고라는 면에서 시민의 책임을 행사하는 시민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본다.<sup>8)</sup>

·인권을 위한, 인권에 대한 교육은 의심할 바 없이 가치를 위한 교육이다. 가치의 실현이나 문화적·지역적 상황에서의 분리를 초래하지 않는 가치에 대해 교육을 승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인권의 보편성이다.<sup>9)</sup>

8) Betty A. Reardon, *Educating for Human Dignity: Learning about Rights and Responsibilities*(Philadelphia: Univ. of Pennsylvania, 1997)3.

·다른 어떤 형태의 교육보다도 더 인권교육은 규범과 가치를 강조하는데 규범과 가치란 사회에 따라 다르며 종교와 문화에 따라 다르다. 인권은 세계 속에서 발전하고 있다. 이 세계는 우리가 상당한 정도의 평화 속에서 함께 살 수 있고, 힘없는 사람들과 특히 박해받는 사람들에게 정의와 공정을 보장하려면 공통의 기준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sup>10)</sup>

대부분의 정부의 정의가 “책임”을 언급하고 이는 반면, 학자들의 보다 추상적인 정의에서는 윤리학의 본질인 “도덕적 의무”와 “도덕적 행동”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다.

·인권교육에 있어, 학생들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인간 활동에 필수적인 조건이 존재하는 것을 보장할 도덕적 의무를 갖는다는 것을 배워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인권은 “도덕적 행동”의 초점이 된다.<sup>11)</sup>

·나에게, 변화시키고, 구조적인 인권교육은 인간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동료인류와 우리의 세상과 더불어 책임 있게 상호작용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려깊게 추구하는 교사들간의 토론이다.<sup>12)</sup>

이러한 정의들의 일부는 내용이나 맥락에 있어서 인권에 대한 것이기를 끝내고, 일반적으로 윤리적 행동에 관한 것이 되어가고 있다. 인권은 윤리인가? 인권의 구조가 구현된 가치 체계가 종교적·문화적 가치 사회와 나란히 존재할 수 있을까? 1988년의 논문에서 David Weissbrodt와 Teresa O'toole은 국제적 인권을 “최초의 보편적 이데올로기”로 기술했다.<sup>13)</sup>

2. 민간단체들의 정의와 마찬가지로, 교육학자들의 정의는 프레이리의 사상에 크게 영향을 받았다.

[인권교육은 학생들을 도와야 한다]정의와 평등이라는 인간 개념에 뿌리를 둔 가치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학생들은 살아가는 가치와 행동의 근거가 되는 원칙을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가치와 원칙을 규명하고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학생들이 우리의 가치와 원칙에 대한 이해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인권문제가 있다면 그들이 유의해야 하는 문제는 어느 것이고, 그렇다면 그들의 관심을 행동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도전할 수 있다.<sup>14)</sup>

9) Centro de Recursos Educativos, *Human Rights Education Curriculum*(San Jose, Costa Rica: Centro de Recursos Educativos, 1992), 7.

10) J. Paul Martin, *Self-Help Human Rights Education Handbook*(New York: Center for the Study of Human Rights, Columbia University, 1998)

11) Joel Spring, *Wheels in the Head: Educational Philosophies of Authority, Freedom and Culture from Socrates to Human Rights*(Boston: McGraw Hill, 1999) 162.

12) Adam Stone(교육자이자 변호사), on the Human Rights Education Associates Listserv, www.hrea.org, 1 February 2002

13) David Weissbrodt and Teresa O'Toole,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1928-1988*: Human Rights, the United Nations and Amnesty International(New York: Amnesty International, 1988) 5.



3. 정규부문의 교육전문가들은 교과과정 속에 이미 있는 여타 형태의 교육(예를 들어 발전 교육, 평화교육, 인성 교육, 세계교육, 시민교육)과 관련해 인권교육을 어디에 위치 지울 것인가에 대해 특히 우려한다. 대부분은 인권이 이러한 다른 형태의 교육에 통합된다고 느낀다. 예를 들어 Betty Reardon은 “인권이 평화의 근본이고 구성요소인 것처럼 인권교육은 평화교육에 근본적이며 구성요소이다.”라고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육자들은 한 주제가 다른 주제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불확실한 채로 남아있다. -(중략)

정규교육은 국가 기구와 그것이 “형성”하는 정책에 항상 조화되어야만 한다. 문제의 일부분은 세계 대부분에서 인권교육은 여전히 새로운 분야이며, 그렇기 때문에 교과과정 속에 오랫동안 있어온 과목 영역에 굴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시민교육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오랜 전통을 가졌고, 교사 양성과 교과과정에서, 심지어 청소년집단과 종교집단에까지 의문의 여지가 없는 지위를 주장할 수 있다. 인권교육이 정말로 중요하다면 그것이 시민교육과 동등하게 존재하는 것은 오직 시간의 문제이다. 나는 인권교육이 결국에는 다른 교과목들을 통합하고 포섭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요약하자면, 학자들은 인권교육이 해야 하는 일은 알고 있지만, 인권교육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는 모르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들의 정의는 양극화되어, 한편으론 이상주의에 빠져있고, 다른 한편으론 현상유지에 한정된 적응을 하고 있다.

## II부. 이론의 문제

### A. 이론을 찾아

80년대 후반, 구소련과 이웃 국가들에서 인권교육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열렸을 때, 나는 도전적인 질문에 반복적으로 직면했다. 모스크바 교육 대학 출신의 교수로서 나는 “혁명 이론 없이는, 결코 혁명운동이 있을 수 없다”<sup>14)</sup>라고 했던 레닌의 선언을 상기했다. 그럼, 인권교육의 이론적 기초는 무엇인가? 이 질문은 이론상의 이데올로기가 기본 학교교육의 일환이었던 사회에서는 본능적인 것이었지만, 실용주의적인 활동가의 배경을 가진 나 자신은 어쩔 줄을 몰라했다. 나는 인권이론과 상호작용 방법론에 담긴 생각을 설명할 수는 있었지만, 인권교육을 알리는 어떠한 체계적인 이론을 선뜻 표현할 수는 없었다.

우선 모든 증거는 Paulo Freire를 강조했다. 이미 1980년에 그의 혁명적인 페다고지는 학습과 사회변화의 성격, 교사와 학습자간의 역동적인 힘, 자기 자신의 현실에 대

14) David Shiman, Teaching Human Rights(Denver: Center for Teaching International Relations, 1999) 2.

15) Vladimir Lenin, "What is to be Done," Essential Works of Lenin, Henry M. Christman, ed. (New York 1966) 69.

한 인식과 비판적 분석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자와 활동가들이 생각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있었다. 그의 혁명적 언어가 대부분의 교육부 장관들에게는 너무 센 것이었음에도, 그의 사고는 인권교육의 발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쳤다.

오늘날, 보수적인 관료들조차도 “교육에 대한 은행저축식 개념”처럼 프레이리식 언어를 사용하고 “비판적 의식”을 무조건적으로 사용한다. 나는 늙은 혁명론자가 자신의 (프레이리) 언어와 사상이 공식적인 UN 문서에서 메아리치는 것을 듣기를 즐거워할 것이라고 상상한다. 예를 들어, 인권교육10년의 지도원칙 중 하나는 다음과 같다:

인권교육을 위한 10년은... 인권교육은 인권을 추상적인 규범의 표현으로부터 학습자 자신의 사회·경제·문화·정치적 상황의 현실로 변화시킬 수 있는 수단과 방법에 대한 대화에 학습자들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sup>16)</sup>

그러나, 인권교육이 아무리 방법론적 시각에서 프레이리로부터 많은 것을 얻었다할지라도, 그의 페다고지는 인권교육의 이론적 기초를 형성하기에는 불충분하다. 우리의 할 일은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해 가르침과 교육으로 노력하는 것”-공동의 규범과 기준에 지구상의 모든 민족들을 포함하는 광의의 도전이다.

사실, 나는 인권교육에 대한 대부분의 정의에 걸쳐있는 보편적인 규범과 기준이란 생각을 너무 “상하하달”식이라고 프레이리가 거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권한강화로서 학습을 바라보는 그의 열망과 학습자의 경험과 지식에 대한 그의 존중에도 불구하고, 프레이리만으로는 인권교육에 대한 충분한 이론을 제공하지 않는다.

### B. 실천으로부터 이론으로

인권교육에 대한 발전된 이론적 기초를 발견하기에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인권교육 자체에서 발전된 실천을 검토함으로써 암묵적 이론을 도출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전세계의 실천가들을 면접하여, 그들이 해온 일이 무엇이며, 왜 그일을 했는지에 대해 물었다. 이들 대부분은 “행동가들”이다. 따라서 자신들의 작업에 대하여 글을 쓸 여유나 경향을 가진 사람들은 없었지만, 질문을 받았을 때 거의 모두가 분명하게 정의된 인권교육의 개념적 기초를 제공했다. 그러나, 그들의 대답은 복잡하고 모순되는 성격을 지녀서 이론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은 없었다. 나는 처음에 수십개 정도의 면접만을 계획했지만, 50개 이상의 면접을 완수한 후에도 여전히 수집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진행중인 이 작업으로부터 아직 최종 결론을 제공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인권교육 이론이 정의하기 어려운 채로 남아있지만, 이들 경험있는 실천가들은 무엇이 인권교육이고 인권교육이 아닌지에 대해 몇 가지 핵심 요소에는 동의했다.:

1. 인권교육은 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및 후속적인 인권문서들에 표현된 인권의 원칙에 분명히 근거해야만 한다. 인권교육은 도덕교육, 시민교육이나 기타 관련된 교육 노

16) UN Doc.A/51/506/Add.1, Appendix



력과 다르다. 왜냐하면 인권교육은 그 권위와 그 타당성을 이들 보편적인 가치로부터 취하기 때문이다.

2. 인권을 가르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은 보편적인 원칙을 인정하는 동시에 개인과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는 인권의 가치와 일치되어야 한다.
3. 인권교육은 인권문서에 대한 지식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인권교육은 총체적인 인간과 관련된 것이고 기술과 태도도 마찬가지로 다뤄야 한다.
4. 인권교육은 개인의 생활에서나 지역과 세계적 공동체 속에서 행동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러한 면접에서는 또한 인권교육자 자신들에 대하여 공통된 자질을 보여주었다:

- 인권교육자들은 인권교육을 그 윤리적 원칙 때문에 높이 평가한다. 이들 교육자 대부분은 불교도, 기독교도, 유대인, 무슬림, 맑시스트이건 간에 특징적인 종교전통 내지 정치 이데올로기를 배경으로 하며, 그들 상당수에게 인권의 원칙은 그들의 본래 신념을 대체하거나 확대하거나 초월하는 것이었다.
- 인권교육자들은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모든 사람들을 단결시키기 위해 인권교육에 대단한 희망을 부여한다. 형이상학이나 신적 존재가 없는 지구적 가치에 대한 일종의 비유신론적인 찬양
- 인권교육자들은 자신들의 사회 속에서 사회변화를 위한 사회적 도구로서 인권교육을 이용한다.
- 인권교육자들은 인격적 형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거의 모두는 지적인 학습을 인권교육이 성취해야 하는 것의 일부로만 간주한다. 인권교육자들은 머리만이 아니라 가슴을 겨냥하며, 자신들이 복무하는 사람들의 가슴과 머리만이 아니라 인권교육자 자신의 가슴과 머리를 겨냥한다.

이상의 내용들이 인권교육의 이상적인 개념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사람들에게서 나온 것이며, 그들 중 상당수는 최소의 자원으로 개인적으로 위험한 상황속에서 일하고 있다.

### III. 신념의 문제

인권교육 실천가들과의 면접은 인권교육을 정의하는 데 있어 더한 어려움을 드러냈다. 그들의 상황이 아무리 다르다 할지라도, 인권의 원칙을 자명한 것으로 그리고 인권교육의 의미와 가치를 자명한 것으로 믿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되어 있다. 인권의 자명성이 그것을 믿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동어반복이다.

인권이 자명한 것이라는 논리적으로 방어할 수 없는 입장에는 강력한 역사적 선례가 있다. 초기 권리 주장의 대부분은 유럽의 계몽주의에서 나왔다. 유럽계몽주의는 권리가 자명한 것이며 이성적인 사람들에 의해 자명한 것으로 인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1776년의 미국독립선언은 “우리는 모든 인간이 동등하게 창조되었고, 조물주로부터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는 진실을 자명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으로 시작된다. 거의 2백년이 지난 후에 세계인권선언의 전문은 자명성에 대해 매우 비슷한 주장을 한다: “인류 가족 모든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평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됨을 인정하며 (Whereas recognition of the ...)”에서 ‘whereas’는 “--라는 사실에서 보면”이라는 무게를 담고 있다. 인권의 철학적 정당성에 대한 질문에 세계인권선언의 기초자 중 한 사람이었던 Jacques Maritain은 “그 누구도 권리가 기반하고 조건에 대해 우리에게 왜냐고 묻지 않을 것이라는 데 동의했다”고 인정했다.<sup>17)</sup>

논리적으로는 왜 인권을 지지하고 인권에 대해 교육하려고 노력해야 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모든 인간에 대한 동등한 관심과 존중말고는 논쟁의 여지가 없는 인권의 철학적 기초는 없어 보인다.<sup>18)</sup> 그렇다면 우리는 오직 우리의 감정의 힘과 확신의 용기에 기초해서만 인권을 위해 그리고 인권에 대해 교육하는가? 대답과 문제는 “yes,” 우리는 그렇게 한다. 인간으로서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세계를 이해하려고 추구한다는 것이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고 해야만 하는지를 생각한다. 현실과 이상간의 긴장은 모든 해학, 모든 활동, 모든 희망의 원천이다.

나는 모든 인권교육자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원하고, 인권 속에서 그러한 열망을 표현할 언어와 비전을 발견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을 통합할 수 있는 원칙에 대한 비전에서 도출된 것이다. 인권교육자들에게 인권은 형이상학, 전환도 필요치 않고 개인의 정체성의 상실도 필요치 않으나, 그들의 최고이상에 호소하고 개인적·사회적 전환 둘 다를 약속하는 신념체계이다.

우리 삶의 많은 측면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권 비전을 신념에만 기초하여 받아들인다고 생각한다. 사랑처럼, 우리는 분석을 허용치 않고 우리자신의 깊숙한 곳에서 인권에 반응한다. 사랑처럼, 그리고 감정과 직관에 기반한 여타의 많은 행위처럼, 우리는 사실을 따라 실용성의 발판과 논리와 법률의 상부구조를 세울 수 있다. 하지만 그 기초는 인류와의 연대를 받아들이나 거부하느냐에 대한 비합리적인 결정에 놓여있다. 어떻게 비전을 위해 교육하는가? 법만으로는 사회정의만으로는 윤리만으로는 충분치 않을 것이다. 인권교육은 도덕적 상상을 다뤄야 한다. 이것은 한 인간이 자기 자신과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 다른 인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이다. 그러나 이런 감정이입적 동질화는 인권교육 훨씬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한다. 일종의 비논리적인 방식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삶과 안녕을 중히 여길 수 있어야만 하고, 그런 이유로 기꺼이 당신 편에서 행동하려 할 수 있어야만 한다. 내가 당신을 전혀 만난 적이 없을 때조차도 그렇고, 또는 내가 당신을 만났고 당신을 아주 좋

17) Jacques Maritain, quoted by Lynn Hunt, "The Novel and the Origins of Human Rights," Presidential Lecture Series, Stanford University, 8 April 2002.

18) Michael Freeman, "The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Human Rights," Human Rights Quarterly 16. (1994) 514.



아하지 않을 때에는 특히 그렇다.

사람들은 사랑과 교육을 동일한 문장에서 언급하는 일이 드물다. 하지만 다시 한번 Freire는 인권교육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한다:

그러나, 세계와 사람들에 대한 심오한 사랑이 없을 때 대화는 존재할 수가 없다... .사랑은 동시에 대화의 기초이자 대화 그 자체이다...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면-내가 삶을 사랑하지 않는다면-내가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나는 대화 속으로 들어갈 수 없다.<sup>19)</sup>

인권은 그러한 대화의 언어, “인류의 공통 언어”가 되었다. 그리고 인권교육자들은 그 언어를 가르치는 사람들이다.

가령 존엄성과 자유처럼 우리가 진정한 인간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이 부정당할 때, 인권의 언어만이 그러한 근본적인 위기를 전달할 수 있다. 법률이나 헌법적 권리의 언어조차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동시에, 이러한 “인류의 공통 언어” 그 자체는 유동성과 복잡성 속에서 성장하고 있고, 세계인권선언의 기초자들이 생각했던 것 이상의 인간 조건에 대해 훨씬 더 표현할 수 있다. 언어 교사처럼, 인권교육자들은 새로운 어휘의 획득을 촉진할 수 있다. 하지만 서정시건 애도이건 축복이건 간에 학습자들이 인권의 언어를 가지고 말하려고 하는 것을 지시하거나 추측할 수는 없다.

물론 어떤 언어건 욕지거리와 거짓말로 사용될 수도 있다. 우리는 인권교육에 내재된 위험성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인권의 비전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언어를 배우는 사람들에게 잠재된 오용, 제한된 목적을 가지고 자신들만의 가치를 위해 한 집단이 전유하는 것, 보수주의자와 합리주의자들에 의한 거부 또는 성급한 혁명분자들에 의한 방기. 우리는 인권교육이 항상 갈등-가치와 문화의 충돌, 개인과 국가간의 투쟁, 갈등하는 권리 요구를 가진 개인들간의 분쟁-을 창조하며, 그러한 갈등을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다룰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나는 인권교육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훨씬 큰 창조적 잠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의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인권교육을 현재 존재하는 방식으로 정의하고, 좋은 실천의 사례를 포착할 수 있고, 성공의 증거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사람들이 이 강력한 도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의 최소한을 어렵듯이 감지할 뿐이다. 정규교육이나 혁명적 이데올로기의 언어로 인권교육을 포장하려 들 때마다, 인권교육은 새롭고 예상치 않았던 방향으로 균열되고 성장한다.

지금은 초기이다. 50년은 매우 짧은 시간이다. 나는 세계인권선언 100주년이 되는 2048년 12월 10일에 컨퍼런스를 제안한다. 그때 아마도 우리는-또는 우리 일의 계승자들은-인권교육이 진정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인권교육이 무엇이어야만 하는 가를 알기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 발췌 번역: 인권운동연구소

19) Paulo Freire, Pedagogy of the Oppressed (New York: Continuum, 1994) 70-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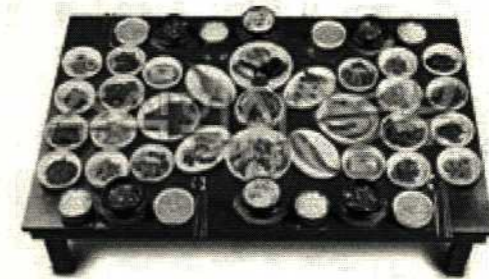
### ★ 활동 1 : 남남, 노동인권뷔페

▶ 목표 : 노동자들이 일터와 사회에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 권리가 무엇인지를 자유롭게 탐색해 본다. 노동인권이 현재 실정법으로 보장돼 있는 권리 목록에 머무르지 않고, 확장하고 획득해 나가야 할 ‘움직이는 개념’임을 이해한다.

#### ▶ 진행방법

1) 모듬별로 색지와 가위, 크레파스 등을 나눠준다.

2) 칠판에 커다란 밥상을 그려놓은 다음, ‘노동인권 밥상’이라고 가정한다. 이 밥상에 올릴 음식 5가지를 모듬별로 토론해 마련한다. 이 때 다른 모듬에서 준비하지 않을 것 같은 1-2가지 특별메뉴가 포함되도록 고민해보라고 한다.



3) 논의가 끝나면 음식이나 그릇 모양으로 그린 색지 위에 “똥이 마려울 때 당당하게 똥 놀 권리”와 같은 권리의 이름을 써넣는 식으로 발표 준비를 한다.

4) 모듬별 음식 준비가 끝나면, 돌아가면서 한 가지씩 중복되지 않게 발표한다. 발표자는 어떤 음식을 마련했는지, 왜 그 음식을 ‘노동인권 밥상’에 올리고 싶은지 모듬별 토론 결과를 간략히 발표한다.



## ★ 활동 2 : 노동인권교육 체험 한마당

## 첫 번째 마당 : 이런 마을 저런 마을

## &lt;빨리빨리 마을&gt;

“우리 마을은 속도가 큰 자랑거리입니다. 노동자들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움직이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속도를 높이기 위해 노동자들은 계속 서 있어야 합니다. 앉아 있으면 움직임도 둔하고, 앉았다 일어서는 시간까지 줄여야 생산성이 높아질 것 아닙니까? 우리 마을에서는 이속도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사장님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 ● ‘사장’의 역할

- ① 찾아온 노동자들에게 잠시도 쉴 틈을 주지 않고 아무 일이나 시킨다.
- ② 무거운 물주전자나 벽돌 꾸러미를 들고 계속해서 뛰어다니도록 할 수도 있고, 노동자들을 일렬로 세워둔 다음 빠른 시간 내에 무거운 짐을 옆으로 전달하도록 시킬 수도 있다. 교실 내에서라면 책상이나 의자를 계속 바꾸어 배치하는 일을 맡겨도 좋고, 외발로 뛰어다니라고 시켜도 좋다.
- ③ 노동자들이 “잠깐만 쉬었다 해요”라는 말이 나오더라도 무시하고 계속 일을 t키고 “빨리 빨리”를 계속 외친다. 노동자들이 불만이 커지면, 앞장서서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을 징계하거나 모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으며, 속도를 더 높일 수도 있다.

## 두 번째 마당 : 제자리인가

▶ 목표 : 채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성별, 나이, 신체조건, 학력 등에 따른 차별의 형태와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 ▶ 진행 방법

- 1) 패스트푸드점에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한다. 한 명은 점장의 역할을, 나머지는 다양한 조건을 가진 응시자의 역할을 나누어 맡는다.  
※ 참여자에게 점장의 역할을 맡기기 어렵다면, 진행 교사가 직접 점장의 역할을 맡아도 좋다.
- 2) 응시자 역할을 맡은 사람들에게는 각기 다른 응시원서를 나누어준다. 각 표에는 성, 키, 몸무게, 나이, 얼굴 생김새, 옷차림, 학력, 장애 여부 등이 다양하게 기재되어 있다.
- 3) 점장 역할을 맡은 사람에게 미리 응시원서와 패스트푸드점 업무 항목을 나눠

준 다음, 검토해 보도록 한다. 그 동안 응시자들은 응시원서의 내용에 맞게 <사진> 란에 자기 얼굴을 그려보면서 응시원서의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시간을 가져본다.

## ■ 업무 항목

- (1) 주방·홀·화장실 청소
- (2) 카운터 주문, 계산
- (3) 버거, 감자치킨 튀김 등 음식 만들기
- (4) 재료 운반, 정리
- (5) 손님 이벤트 열어주기
- (6) 설거지, 주방 정리

- 4) 이제 면접시험장이라고 가정하고 응시자들을 불러모아 면접을 보는 시간을 갖는다. 점장 역할을 맡은 사람은 몇 가지 질문을 해 본 다음, 각 응시자들을 채용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6명만 채용할 수 있고, 채용하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는 업무를 배치해 주어야 한다.  
※ 채용 기준으로는 고객의 선호도, 매장의 이미지, 업무의 효율성, 순종적인 태도 등이 될 수 있다.
- 5) 합격 결정이 내려지고 점장으로부터 업무 배치를 받은 사람들을 일렬로 서게 한다. 자신이 맡게 된 업무의 내용을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 몸짓을 1분 정도 반복적으로 수행해 보도록 한다.
- 6) 몸짓을 모두 멈추게 한 다음, 혹시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배치 결과가 부당하게 느꼈다면 왜 그렇게 느꼈는지를 이야기해 본다. 채용에서 탈락한 응시자들에게도 채용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야기해 본다.
- 7) 점장 역할을 맡은 사람에게 채용 기준이 무엇이었는지를 물어본 다음, 그 채용 기준이 과연 타당한지에 대해 전체에게 의견을 묻고 토론을 벌인다.



사진	이름	김빨강	사진	이름	이노랑
	성(sex)	여		성(sex)	남
나이	15		나이	18	
키	155cm		키	184cm	
몸무게	41kg		몸무게	68kg	
얼굴모양	뾰족한 얼굴형, 긴 생머리		얼굴모양	계란형, 스포츠형의 짧은 머리	
닮은 사람	가수 이정현		닮은 사람	배우 조인성	
학력	중학교 재학		학력	인문계 고등학교 재학	
장애여부	장애 없음		장애여부	장애 없음	
옷차림	교복		옷차림	빨간 셔츠에 흰 바지	

사진	이름	박주홍
	성(sex)	남
나이	17	
키	165cm	
몸무게	80kg	
얼굴모양	사각턱에 살이 통통, 스포츠형의 짧은 머리	
닮은 사람	개그맨 윤정수	
학력	고등학교 재학	
장애여부	장애 없음	
옷차림	회색 티 + 멜빵바지	

사진	이름	강초록
	성(sex)	여
나이	17	
키	170cm	
몸무게	75kg	
얼굴모양	둥글납작, 통통한 볼, 단발머리	
닮은 사람	개그우먼 이영자	
학력	상고 재학	
장애여부	장애 없음	
옷차림	힙합 스타일	

사진	이름	정과랑
	성(sex)	여
나이	17	
키	168cm	
몸무게	50kg	
얼굴모양	길쭉한 계란형, 긴 파마머리	
닮은 사람	가수 보아	
학력	고등학교 중퇴	
장애여부	장애 없음	
옷차림	졸티 + 치마	

사진	이름	황자주
	성(sex)	남
나이	18	
키	177cm	
몸무게	75kg	
얼굴모양	둥그랗고 여드름 자국, 앞머리가 조금 긴 편, 안경	
닮은 사람	개그맨 김용만	
학력	공고 재학	
장애여부	장애 없음	
옷차림	면 티셔츠 + 청바지	

사진	이름	유보라	사진	이름	성하양
	성(sex)	여		성(sex)	남
나이	18		나이	17	
키	165cm		키	168cm	
몸무게	48kg		몸무게	54kg	
얼굴모양	사각형의 얼굴, 짧은 커트, 까무잡잡한 피부, 안경		얼굴모양	둥그란 얼굴, 학생 커트	
닮은 사람	개그우먼 조혜련		닮은 사람	배우 류승범	
학력	고등학교 중퇴		학력	인문계 고등학교 재학	
장애여부	신체장애(다리가 조금 휜)		장애여부	언어장애(말을 조금 더듬음)	
옷차림	검은색 남방 + 청바지		옷차림	스포츠 패션	

세 번째 마당 : 정보 먹는 하마, 입사지원서

▶ 목표 : 정보인권에 관한 감수성을 키우고, 일터에서 노동자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수집, 유포해서는 안 됨을 안다.

▶ 진행 방법

- 1) 노동자에게 불필요하고 부당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아래 표의 입사지원서를 제시한다.
- 2) 모듈별로 입사지원서 항목 가운데 불필요하다고 생각되거나 노동자에게 차별이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항목이 있는지 가려보도록 하고, 그 이유를 포스트 잇에 적어 항목 옆에 붙여본다.
- 3) 모아진 의견을 바탕으로 불필요하거나 부당한 항목을 뺀 대안적 입사지원서 양식을 만들어본다.
- 4) 모듈별로 만든 입사지원서 양식을 비교해 보면서 더 뺄 항목이 있는지 토론해 본다.



## 입 사 지 원 서

사 진  ※최근3개월 이내 촬영 ※ 3.5cm×4.5cm	접수번호		1차 희망근무지								
	모집분야		2차 희망근무지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성별			혼인 여부								
연락처		주소: ( - )									
		휴대폰:	전화번호: ( ) -								
		E-mail:									
학 력	졸업년도	출신교 및 전공		소재지	전공부문 관심분야						
	년 월	고등학교	과졸업		교내외 특별활동						
	년 월	전문대학	과졸업		자 격 면 허	종 별	취득 년월일				
	년 월	대학교	학과졸업졸예								
	년 월	대학교	대학원 학과졸업졸예수료								
	년 월	대학교	대학원 학과졸업졸예수료								
경력	직장명	근무기간	최종직위	담당업무	월급여	퇴직 사유					
		년 월 ~ 년 월									
신 체	신장	체중	혈액형	시력	색맹/색약	과거 질병	특이사항	기	취미	특기	종교
	cm	kg	형	좌우				타			
가 족 사 랑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학력	직업	직장명	직위	동거여부	주거상황	자가전세기타( )	
								동·별	재 산	동산	만원
								동·별		부동산	만원
								동·별	가족의 월소득		
병 역	구분	현역( )	보충역( )	면제( )	미필( )	군별	계급	병과	보충역 또는 면제 사유		
	기간	년 월 ~ 년 월 (개월)									
사 회 관 계	직장내	성명	부서	직위	가입 정당						
	가족/친척/지인										
	추천인	성명	직장명	직위	가입단체						
성장 과정 (가정환경, 대인관계 중심으로)											

### [읽을거리] 입사지원서의 횡포

#### 정보 수집이 낡은 차별과 감시

인터넷을 이용하다 보면 회원으로 가입하거나 게시판에 글을 쓰거나 자료를 다운받을 때 주민등록번호나 나이, 혼인여부, 주소, 연락처 등을 반드시 쓰라는 요구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어느 사이트 회원으로 가입한 뒤 내 나이와 신분, 연락처 등을 어떻게 알았는지 학원 홍보 전화나 상품 홍보 메일을 받은 경험을 가진 분들이 꽤 있을 것입니다. 그 사이트의 운영자가 다른 곳에 나의 관련 정보를 팔아넘겼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도 학생 관리나 지도를 명목으로 이런 저런 개인정보를 많이 수집합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가 갖고 있는 어린이, 청소년에 관한 정보에 눈독을 들이는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2004년 2월에는 졸업앨범 제작업체와 학교직원이 결탁해 전국 1천여 개 학교의 초·중·고교생 100만명의 이름, 사진,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인터넷 회원 사이트에 팔아넘긴 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별다른 생각없이 제공한 정보가 나의 취향이나 생각, 사생활을 추적하여 돈벌이 수단이나 다른 통제 수단으로 이용되는 일이 잦습니다.

그러므로 누군가에게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꼭 필요한 정보 이외에 다른 정보까지 요구하고 있는지 않은지를 판단할 수 있는 감수성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내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나 몰래 나의 관련 정보를 누군가가 모으고 있지는 않은지, 모여진 정보가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는 않는지도 관심있게 지켜보아야 합니다.

#### 입사지원서 안에 숨은 차별과 횡포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회사에 취업하고자 할 때 작성해야 하는 입사지원서를 보면, 개인의 능력이나 채용 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합리적인 정보 이외에도 신체조건과 가족관계, 학벌, 혼인여부, 성장과정, 재산 정도, 과거 앓았던 질병까지 개인의 신상정보를 빼곡히 써서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는 고용 차별을 낳을 뿐 아니라, 수집 이후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위험까지 있습니다. 더구나 서류 심사에서 떨어지거나 합격 결정이 난 후에도 입사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회사와 상관없는 사람들의 세세한 신상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2003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1년 동안 대기업과 공기업 38개 업체의 입사지원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들 입사지원서가 업무수행능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당한 정보들을 광범위하게 요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 가지 예로 혼인 여부에 관한 질문은 단지 기혼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에서 탈락될 가능성을 높입니다. 가족의 재산 정도나 직업, 추천인 등을 물어보게 되면 가족의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우선 채용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회원으로



가입한 단체에 관한 질문 역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사회적 가치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채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여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려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삼성, LG, 현대 등 조사 대상이 된 업체들에게 차별적인 항목을 입사지원서에서 삭제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업무 수행 능력을 판단하는 데 필요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정보만을 요청하고, 수집된 정보가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에 불평등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의무가 업체에게는 있으니까요.

국가인권위원회가 불필요한 정보라고 지적한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분류	항목
개인 신상	△성별 △나이 △출신학교 △병역면제사유 △종교 △성장과정 △출신 지역 △건강 특이사항 △장애 여부 △주거형태 △혼인여부 △형제관계 △재산 △직장내 가족/친척/지인 △추천인 △가입단체 △과거 질병 △고시/자격증/취업준비 △친인척
신체 사항	△체중 △신장 △색맹/색약 △시력 △혈액형
가족 관계	△성명 △연령 △학력/출신학교 △직장 △직위 △동거 여부 △부모 생존 여부 △학비 지급자 △거주지 △가족 월수입 △가족 종교

**네 번째 마당 : 자꾸자꾸 멀어져간다!**

▶ **목표** : 날로 악화되어가는 노동자 인권상황을 들여다본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혹은 예상되는 변화를 들려주고 그에 따른 결과를 예상해본다. 노동인권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어떤 활동들이 필요한지 대안을 제시, 토론해 본다.

▶ **참가인원** : 10명(진행자 2명)

▶ **진행과정**

- 1) 참가자들이 자유롭게 설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가로로 열 개의 선을 그린다. 세 번째 정도의 가로선에 '이 정도가 노동인권의 기본이지!' 라는 문구를 표시해 기준을 마련한다. 열 개의 선에 나름의 인권상황을 설명하는 문구를 적어볼 수도 있다.
- 2) 참가자들을 2명씩, 5개의 모둠으로 나눈다.
- 3) 각 모둠마다 서로 다른 '노동자카드'를 나눠준다. 그 노동자카드를 목에 걸 수 있도록 준비한다. 노동자카드와 함께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상황이 적힌 '노동인권상황카드'를 나눠준다.
- 4) 각 노동자들의 노동인권상황카드를 보고, 모둠에서 토론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인권상황줄에 가서 선다.

- 5) 진행자는 노동인권상황을 후퇴시킬 수 있는 정책들을 소개한다. 노동자들에게 직접적인 변화가 느껴지도록 정책들을 소개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6) 정책들이 시행될 경우 노동자들의 인권상황이 어느 정도 후퇴할지를 모둠에서 토론하여 인권상황줄을 이동해본다.
- 7) 후퇴된 상황에서, 전진할 수 있는 대안을 모둠별로 토론, 발표하고 앞으로 나간다.

▶ **준비물**

- 1) 인권상황줄
- 2) 노동자카드(예시) : 건설노동자 김대용/학교급식조리원 김영희/실업계고 이희영/은행텔러 한재영/전자회사 이영철
- 3) 노동인권상황카드(예시)

건설노동자 김대용(55세, 남) 청소일을 하는 부인과 중소기업에 다니는 아들과 대학생인 딸이 있다. 건설일용노동자로 일해온 김대용 씨는 얼마전 대구경북건설노조에 가입하고 파업에 참가했다. 일당쟁이 노가다의 설움을 벗고 당당한 노동자로 태어나기 위해 노조에 가입하고 파업에 동참했다. 노조에 가입하면서 김대용 씨는 조금씩 변화기 시작했다. 술과 담배를 줄이고, 자식들에게 컴퓨터를 배워 선전활동에 참여했으며, 동료들을 만나 노동조합 가입을 권유했다. 한달이 넘는 파업으로 경제적으로는 힘들어졌고, 부인과 아들의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 부담스럽다. 6

학교급식조리원 김영희(60세) 사별 후 자식 셋은 모두 독립, 결혼했다. 위탁급식업체에서 일하고 있다. 방학 때는 수입이 없고, 일은 힘들지만 자식들이 보내주는 생활비만 기다릴 수 없다. 아직도 일할 수 있다는 게 좋지만, 관절이 좋지 않아 걱정이다. 얼마 전 있었던 급식사고 후 학교급식 모두 직영급식으로 전환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약간의 희망을 품고 있었는데, 곧 있을 위탁업체와의 재계약 때 55세 이상은 재계약하지 않는다는 소문이 돌아다녀 불안하다. 같이 일하는 노동자들 중에 노조에 가입한 사람들이 노조가입을 권하고 있어 고민이다.

전자회사 이영철(30세, 남) 전자회사 정규직으로 일하며,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 월급도 타회사 비해 많은 편이고 복리후생도 좋아 직장에 만족하고 있다. 3년 뒤 애인과 결혼할 계획이다. 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아 의료비가 많이 든다.



실업계고 이희영(16세, 여) 부모님과 동생과 함께 살고 있다. 항상 용돈부족을 느껴 알바를 하고 있다. 얼마 전 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다. 졸업 후 취업을 하고 싶지만 원하는 직장에 다니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아버지는 IMF 때 명퇴 후 입사와 퇴사를 반복하고 있고, 최근 몇 달간은 휴직상태다. 어머니는 전자회사 하청에서 일하는 데 잔업, 특근을 매일 해야 15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 하지만, 수시로 해고 위협이 있어 그것조차 고용이 불안정하다.

은행텔러 한재영(30세, 여)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며 혼자 살고 있다. 경제적으로는 힘들어졌지만 독립된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계약직 은행텔러로 2년 가까이 근무했다. 비정규법안이 통과되면 2년 이상 일한 계약직들은 정규직이 될까란 언론보도를 접하고 희망을 품고 있다. 1년 남은 적금을 타면 월세에서 전세로 이사할 계획이고, 계속 혼자 살 계획이다.

#### 4) 노동인권을 후퇴시키는 정책(예시)

- '06.8.8에 발표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의하면 공공기관의 업무를 '핵심업무'와 '주변업무'로 구분한 뒤, 주변업무에 대해서는 외주화를 할 수 있게 허용하고, '핵심업무'에 대해서도 6개의 이유 중 하나만 충족하면 외주화를 할 수 있게 함. 그 이유 중 하나로 "외주화에 의해 '규모의 경제효과'등으로 비용절감효과가 크고 명백한 경우"가 제시됨.
  - ☞ 외주화 확대,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권, 노동3권, 생존권 위협
- 정부의 비정규법안에 따르면 기간제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제한하지 않은 채 사용할 수 있는 기간만 최장 2년으로 연장함.
  - ☞ 기간제 확산, 2년 마다 주기적 해고 강요
- 정부의 비정규법안이 통과되면 사용사업주가 불법파견을 행한 경우 2년이 지나면 고용이 의제되지는 않고 다만 고용의무가 발생함. 또한 비정규법안에는 원청사용자의 책임 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음.
  - ☞ 현행 법에 의하면 합법 파견 2년 후 고용의제, 불과의 경우 법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고용의제로 주장해 왔고 해석상 가능했음. 그러나 개정 법에 의하면 불과 고용의무로 후퇴됨으로써 파견노동자들의 노동권 후퇴

- 2007년 1월 1일부터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이 법적으로 금지되도록 노조법 부칙에 규정되어 있으며, 정부 또한 노사관계로드맵(이른바 선진화방안)에서도 이 내용을 확인하고 있음.
  - ☞ 전 세계적으로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을 법으로 금지한 사례 없음. 이는 현재 10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88%라는 현실을 감안할 때 노동3권의 심각한 후퇴를 조장할 것임.
- 현재 노동조합이 파업을 할 경우 대체근로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음.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사관계로드맵에 따르면 공익사업장에서는 대체근로를 허용하려고 하고 있음.
  - ☞ 노동자들의 파업권 제한.
- 현재 긴급조정기간은 30일인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사관계로드맵에 따르면 그 기간을 60일로 연장하려고 하고 있음.
  - ☞ 공익사업장 노동자들의 파업권 제한.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부당해고시 처벌조항이 있는데 정부는 노사관계로드맵을 통해 벌칙을 삭제하거나 상습적 부당해고에 대해서만 처벌하도록 하려고 함.
  - ☞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제한. 사용자들의 해고권 남용 예상됨
- 2005년 11월 23일 정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의 쌀비준 강행처리. 이로 인해 향후 미국쌀의 시장점유율이 확대될 것이고, 밥상용 쌀 시중판매 가능해짐. 기타 이면합의로 인해서 중국산 사과, 배의 수입허용 등 농업 분야 다방면에 걸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 먹거리 불평등, 노동자들의 건강권 악화 예상됨
- 정부는 한미 FTA협상을 통해서 대학법인 영리허용을 추진하려 하고 있음. (등록금 인상 예상됨)
  - ☞ 교육 불평등 심화 예상됨.
- 정부는 한미 FTA협상을 통해서 의료시장 개방을 추진하려 하고 있음. 또한 유전자 조작 식품의 대거 유입 및 광우병 쇠고기의 엄청난 수입 예상됨.
  - ☞ 건강 불평등, 노동자들의 건강권 악화 예상됨
- 정부는 한미 FTA협상을 통해서 전기 가스 및 수도와 같은 공공 서비스의 민영화를 추진하려 하고 있음.



☞ 공공성 악화, 생필품 사유화 통한 노동자 삶의 파탄.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해고 예상

- 최근 포항건설노조는 포스코 본사 점거 및 파업을 진행한 바 있고, 그 과정에서 60여명 이상의 구속자 발생함. 뿐만 아니라 하중근 열사의 사망, 한 여성 시민의 유산(임신 7개월째) 등이 발생함. 아직까지 포스코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정부와 포스코 자본측은 나몰라라 하고 있음.

☞ 건설 노동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과 노동조합에 대한 타격. 하지만 노동자들의 투쟁이 있었기에 적어도 문제를 사회적으로 부각시켰고 향후 연대 투쟁의 정도에 따라서 문제 해결의 실마리 마련될 수 있을 것임. (긍정, 부정 판단내리기는 어렵지만..)

- 정부는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의 강력한 문제제기로 인해서 실업계고 현장실습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음. 대책에 따르면 향후 간접고용 형태의 현장실습은 절대적으로 금지되게 되었고, 교육권 보장 등을 위해서 현장실습은 3학년 2학기 2/3이상 수업을 이수한 경우에만 가능하게 하였음.

### ★ 활동 3 :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 목표 : 직장내 성차별이 발생했을 경우 대처할 수 있는 힘을 기른다.

▶ 진행방법

- 1) 모둠별로 직장 내 성차별에 대한 사례들을 모아 본다
- 2) 모둠별로 3가지씩 선정하여 두 사람 씩 짝을 지어 1가지 상황씩 발표한다.

### ★ 활동 4-1 :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서

▶ 목표 :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조건에 대한 권리를 정확하게 안다.

▶ 진행방법

- 1) 먼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법을 위반한 상황이 담긴 상황카드를 제시한다.

- 2) 모둠별로 상황카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잘못된 점을 찾아내 발표해 본다.
- 3) 발표가 끝나면 상징그림과 짝막한 노동기준을 담은 '권리카드'를 나누어준다. 상황카드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권리카드를 찾아내 서로 짝을 지어 본다.

<상황카드와 권리카드 그림 첨부>

### ★ 활동 4-2 : 알바 생활백서

▶ 목표 : 알바를 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노동인권 침해 상황과 생활상의 어려운 점 등을 풍자적으로 표현해 냄으로써 현실에 대한 자각과 미래에 대한 상상의 계기를 마련한다.

▶ 진행방법

- 1) 2~3명씩 한 모둠을 구성한다.
- 2) 모둠별로 알바를 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모습을 풍자 형식으로 만들게 한다. 유니버스 형식을 취하건 다른 형식을 취하건 주제 구성은 모둠별로 다양하게 선택한다. "사장님이 @@@할 때 나는 @@@한다" "알바로 살아남기 위한 생활 지혜" "나처럼만 비굴하면 알바하기 편하다" "지역별 알바 생활백서" "알바하면서 사장을 괴롭히는 기막힌 방법" 등등
- 3) 콩트, 모노드라마, 광고, 노래, CF, 사진 컷, 영화의 한 장면, 리메이크 등 다양한 형식으로 제작할 수 있다.
- 4) 모둠별로 발표를 한 뒤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서" 프로그램을 바로 이어서 진행한다.



## 노동인권교육사례

- 유형 1 : 노동인권네트워크 워크숍 참가 - 지역에서 민주노동당 지역위원회와 전교조 지회가 공동으로 청소년 대상 교육 실시(주로 서울 지역에서 실시)
- 유형 2 : 지역 노동자교육기관에서 노동인권워크숍 실시(내용과 강사진은 노동인권네트워크에서 지원) - 천주교노동사목에서 교육실시, 단위 학교 재량 활동 시간에 교육, 청소년 단체가 시로부터 지원을 받아 실업계 학생대상 교재 제작 및 교육, 전교조 지부 참실위에서는 자체 워크숍 실시 계획 중 (인천지역)
- 유형 3 : 노노모 등 청소년 관련 단체가 정부기관으로부터 예산 지원을 받아 청소년 노동인권교육(노동인권네트워크 자문)실시
- 유형 4 : 전교조 지부나 지회가 참실마당의 한 주제로 노동인권교육 실시
- 유형 5 : 정부기관(한국노동교육원, 지방노동청) 주관으로 노동교육(근로인지교육) 실시

### 사례 1 | 광주실업교육위원회

#### 노동인권교육을 하기 위해

아무리 좋은 자료가 있을지라도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나 인원이 없으면 유명무실이다. 정규 교육과정을 통해 노동법을 공부한다는 자체가 사실 힘들다. 몇 가지 제안을 해 본다.

#### 【학교 단위에서】

##### 1. 현장실습 전의 교육

실업계 고등학교는 현장실습을 실시하기 전 학생들에게 노동인권교육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학교에서는 최소한의 근로기준법을 학생들에게 알려주어 현장실습에서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불어 현장실습 전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 등의 일하는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노동인권교육을 받아야 한다.

#### 2. 창의적 재량 활동 활용

좋은 노동인권교육 자료가 있어도 수업에 활용하기 위해선 정규적인 교과시간이 존재하여야만 한다. 재량활동 안에는 교과 재량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이 있다. 교과 재량활동은 일반과목위주로 편성되므로 창의적 재량활동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문제점이 있다면 창의적 재량활동 시간이 교과 시수 조정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으므로 어려움이 있다. 학교 내에서는 적극적인 시수조정을 통해 학생들에게 노동인권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3. 조회 종례 시간의 활용

현행 최저임금이 시간당 얼마인지? 단 하루만 일해도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등 간단하게 조회 종례시간을 이용하여 아이들에게 교육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 【교육청단위에서】

##### 1. 적극적인 지원

학교에서 창의적 재량활동을 통해 노동인권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자원 지원을 해야 할 것이며, 여러 노동단체와 연결하여 학교단위로 외부에서도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 2. 연수 프로그램 개설

전남교육청의 경우 지난 여름방학 때 노동법교육과정을 직무연수로 개설하여 일선 교사들이 참여하는 방법이 있었다. 적극적으로 연수를 개설하여 현장에 있는 선생님들이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인권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 팀을 구성하여 지원하여야 할 것이며,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개발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 【지역사회에서】

##### 1. 직업교육 발전협의회 구성

우리 아이들도 지역사회의 구성원임에 틀림없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대학교를 졸업하던 지역사회에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인적구성원으로서 우리 아이들을 인정



하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직업교육이 망하면 지역사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직업교육에 대한 조급함을 가져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학교가 연계하여 직업교육발전을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일하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청소년의 노동인권에 대하여 신중하게 고민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고민은 국회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정책연구 개발 용역과제에 제출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개선방안 연구」 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사례2** 천주교 노동사목 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교육

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 교육

신앙 2006.05.17 18:07

만수3동 성당에서는 청소년을 위한 노동인권교육이 있었다.



**취지**

- 지난해 국회에서 청소년 단체들이 모여 고3 현장 실습생들의 노동 실태 조사를 기자 회견으로 발표한 후 청소년들은 노동법의 사각 지대에 놓여있음이 재확인 되었습니다.
- 전 연령층이 정규 교과 과정에서 근로기준법을 배우지 않음으로 헌법에 보장된 노동 기본권의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로 스스로가 노동자라는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방법**

- 단순히 노동법 지식 내용을 외우게 해서 습득 시키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스스로 배워가도록 이끄는 참여 프로그램 형식의 교육

**1. 동그라미의 비밀**

**방법**

- 메이저리그 야구선수, 교사, 농민, 의사, 개인택시기사, 아나운서, 동방신기 등등
- 20가지의 직종을 나누어 주고 노동자인지 아닌지 판단하게 하는 프로그램.
- 동그라미 안에 노동자가 들어가고 밖에는 노동자가 아닌 사람이 있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동그라미를 밟고 있도록 한다.

**내용**

- 노동법에 의해서 노동자인 경우는 업무의 지시를 받는지,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하는지 등을 설명해준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만 노동자라는 생각에서 벗어



나 도록하는 것과 노동자로 인정이 되면 근로기준법의 보호와 적용을 받는 것이 당연함을 일깨워준다.

예>메이저리그 야구선수- 노동자, 노동조합이 있으며 구단과 근로계약을 맺는다.  
동방신기- 메니지먼트사와 계약을 맺고 활동을 한다. 임금을 목적으로 일한다  
노동자등 등

2. 생활임금이란?

방법 : 4인 가족이 한 달 동안 얼마정도의 돈이 지출되는가를 청소년들이 직접 금액을 적고 그 총액이 얼마인지 알게 한다.

식비, 교통비, 집세, 경조사, 교육비, 용돈 등등

내용 : 4인가족 표준 생계비에 대한 설명과 현행 최저임금 시간급 3100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아르바이트로 3100원 못 받았을 경우 어떻게 법에 보장된 권리를 찾는 방법을 알려준다.

3. 노동인권 골든 벨을 울려라

20개 정도의 노동인권 범주에서 시간관계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중 극히 일부분만 진행하였고, 주된 참가자는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생의 눈높이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으로 모두 30여명 정도가 참여했다.

**사례2**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예비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학생교육」

<실업계고등학교 노동인권교육 사례발표문>

작성 : 박 주 영 (2006. 8. 27.)

**노동인권교육 수행보고**

1. 사업 개요

○ 사업명 :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협력사업

「예비노동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학생교육」

- 주 최 :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 후 원 : 국가인권위원회

2. 사업 목적

○ 현장실습 및 산업현장의 진출을 준비하는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 기본적인 노동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노동자로서의 권리의식을 함양하고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며, 이를 통해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7조에 의거,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의 현장실습 시행에 있어 각 학교는 「각급학교현장실습운영에 관한 규칙(교육인적자원부훈령 제620호)」에 따라 현장실습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실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 세부지침』에 따라 각 학교는 “현장실습 파견 전에 반드시 안전교육과 근로기준법 등을 교육”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교원의 전문지식 부족과 학교예산 및 전문인력부족으로 이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실업계 고등학교는 본 사업을 활용하여 사업체 파견 전에 학생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현장실습을 도모할 수 있음.

○ 노동부의 『청소년 종합대책』에 따르면, 청소년고용촉진방안으로 각급 학교 교과과정에 진로· 직업교육 내용을 적극반영하도록 하며, 특별·재량활동 시간을 통해 진로·직업교육을 실시하도록 유도하고, 직업견학·체험 활성화를 위해 현직 교사 연수를 확대하는 것을 비롯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직업교육강사로 활용하여 직업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역단체 및 전문가와 학교간에 연계관계가 형성되지 못하여 학생들에게 직업동기를 부여하는 진로·직업교육이 제대로 실시된 적이 없음. 따라서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본 사업을 활용하여 다양한 업종과 업무성격 등을 분석하고 그러한 산업현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노동법적 권리들을 살펴봄으로써 학생들의 직업동기를 북돋는 진로·직업교육을 병행할 수 있음.

3. 노동인권교육

○ 교육 대상 : 서울·경인지역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학생



○ 교육실시기간 : 2006. 6. 15.~ 2006. 7. 31.

○ 교육내용 : 실제로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례들과 학생들의 경험들을 직접 들어보면서,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노동법 기본지식(근로계약, 임금 및 근로조건, 해고, 남녀차별 및 직장내 성희롱, 산업안전 및 산업재해, 4대보험, 근로3권 등)에 대해 살펴보고, 현행법이 보장하는 노동법상 권리들이 침해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소개하는 것을 강의의 주 내용으로 함.

#### 4. 노동인권교육 실행규모

○ 교육 참여 강사인원 : 18명

○ 교육횟수 : 84회

○ 교육 참가학교수 : 23개교(총 48개교)

○ 교육 참가학생수 : 6320명

○ 강의규모

· 소규모 강의 : 대상인원 30-40명(54회)

· 중규모 강의 : 대상인원 60-80명(23회)

· 대규모 강의 : 대상인원 100-120명(1회)

대상인원 350명 (1회)

· 소규모 + 방송강의 : 직접강의 40명 + 방송강의 300-500명(5회)

#### 5. 평가 및 문제점

○ 학교의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인식변화

· 현재 일선 학교의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인식 및 필요성은 과거에 비해 많이 높아진 상태. 다만 여전히 “노동”, “노동자”라는 용어에 대한 거부감, 의식화교육이라는 인식이 잔존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학생들의 노동법적인 권리의식 강화를 요청. 일부 학교담당자의 경우 직장예절이나 인내심, 웃어른에 대한 예의범절 등 인성교육의 측면을 강조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음.

· 단지 노동법교육이 아닌 노동인권교육으로서 강사들이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노동, 노동자, 노동인권을 이야기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갖게 하였음.

○ 학생들의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관심도

·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80%정도가 대학진학을 앞두고 있고, 20% 정도의 학생들 중 약 70-80%를 차지하는 남학생들의 경우 군복무를 앞두고 있어 졸업직 후 바로 취업하는 인원은 매우 적은 편에 속함.

·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특히 아르바이트 중 권리침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고용상의 법적 권리와 구제방법에 대해 강사들이 경험한 실제 상담사례들을 소개함으로써 흥미도를 높인 측면이 있으나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자신에게 당면한 문제로 인식하는데는 여전히 한계가 있었음. 따라서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부모, 형제자매, 친구가 당할 수도 있는 문제들임을 강조하고, 함께 고민하고 풀어간다는 학습동기를 자극하고자 하였음.

· 강의평가시 전체응답학생들 중 40%정도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었으며 그 중 20%만이 고용상 불이익조치를 당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불이익조치의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물었을 때, 임금체불과 관련하여서만 권리침해라고 인식하고 있었고, 반말·욕설 등 인격모독, 근로시간 일방적 연장, 업무상 사고에 대한 치료비 자부담, 성인/남성 근로자와의 차별대우 등에 대해서 특별히 부당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음.

○ 학생들의 이해도 및 강의내용의 구성

· 강의진행시 약간의 관심만 가지고 있다면, 전반적으로 강의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았음(강의평가서상 강의내용 이해도를 묻는 질문에 대하여, ‘잘 이해할 수 있었다’(29%), ‘이해할 수 있었다’(39%), ‘보통이다’(31%)로 응답하여 학습목표나 학습내용에 대해 비교적 어렵지 않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임).

· 노동인권교육이라고 하더라도 쓸모있는 노동법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대강의 노동법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에 머무를 수는 없음. 따라서 현실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례들의 사실관계는 어떤 것이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강의시간이 촉박한 경우가 많음. 강의의 질과 시간상의 문제

· 실제 사례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사안들(예를 들어 퇴직금지급 회피를 위한 연봉계약을 문제)은 다양하고 복잡한 법률관계를 띄게 되는 경우가 많아, 학생들이 경험해 본 적 없는 사실관계와 낯선 용어들(가령 연봉제, 퇴직수당, 퇴직금중간정산)로 인하여 이를 이해시키는데 강의시간상 한계가 있어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함.



노동인권교육안

활동명	노동머신(Machine)	인원	40명	형식	퍼포먼스 프로그램
활동목표	사람이 기계의 부품처럼 소모될 때 벌어지는 인권 침해 상황을 체험해 본다.				
활동단계	활동내용				교수자료
1과정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명씩 두 모둠으로 나누어 서로 경쟁구도를 취한다.</li> <li>* 각 모둠별로 관리자를 내정한다.</li> <li>* 전체 진행자는 두 모둠에게 공통의 과제를 제시 한다.</li> <li>① 선발 15명을 정하고, 후보 5명은 대기한다.</li> <li>② 공전달하기, 빨리 전달하기, 가로받기&amp;세로주기, 공2개로 돌리기...</li> <li>③ 공굴리기, 빨리 굴리기, 두 개 굴리기, 세 개 굴리기...</li> <li>* ①②③을 진행하면서 관리자는 후보와 선발을 교체하는 등 전략을 짠다.</li> </ul>				공 4~6개
2과정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모둠별로 7명을 선출한다.</li> <li>* 탈락 된 이들은 앉아서 구경한다.</li> <li>* 7명씩 두 모둠이 다시 경쟁한다.</li> <li>② 손잡고 풍선띄우기, 두 개 띄우기, 세 개 띄우기</li> <li>* 이때 관리자는 작전 지시를 할 수 있으나, 탈락자와 교체시킬 수는 없다.</li> <li>* 이긴 모둠에게는 부상으로 '평가와 격려'시간에 첫발언권을 수여한다.^</li> </ul>				풍선 6~10개 행복쪽지
마무리 (20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느꼈던 불편한 마음과 &lt;ex.관리자의 편협함과 부덕으로 인한 망고생(?), 기계처럼 기능하는 모습 등&gt; 우리의 일터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연관하여 이야기 해보고,</li> <li>노동인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생각해 본다.</li> <li>* 관리자 대변도 들어본다.(단, 관리자의 컨셉은 미리 설정해 준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풍선 안에는 '사랑', '돈', '건강', '친구' 등의 행복의 단어를 적은 쪽지를 넣어 둔다.</li> <li>▶ 프로그램이 끝나면 풍선을 터뜨려서 행복의 메시지를 모둠이 함께 나누어 갖는다.</li> <li>▶ 행복쪽지는 인원수만큼 준비하면 좋다.</li> <li>▶ 1시간소요 프로그램이 부담된다면 10분씩 진행하여 최소한 30분소요 프로그램으로 배정한다.</li> </ul>					
비고	본 프로그램은 상황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이 가능합니다.^			작성자	문혜진

★ 활동 5 : 똑딱똑딱 조건별 프로그램 만들기

▶ 목표 : 참여자들의 특성과 교육 요건에 맞는 '맞춤형' 노동인권교육을 직접 기획하고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른다.

▶ 진행방법

- 1) 먼저 노동인권교육 진행자들이 교육 공간(주로는 학교의 안과 밖), 참여자 수, 교육기간 등 다양한 요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음을 환기시킨다.
- 2) 워크숍 참가자들이 풀어내고 싶은 요건을 골라, 비슷한 욕구를 가진 이들과 모둠을 구성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학교 밖에서 50명이 넘는 참여자들이 대규모로 참여하는 단기 프로그램을 짜보고 싶은 이들이 있다면, 그들끼리 모이도록 한다.
- 3) 모둠 구성이 끝나면, 교육의 목표, 소요 시간, 참여자 수, 참여자의 특성 등을 구체화한 다음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활동 내용을 짜보도록 한다. 활동 내용을 기술할 때는 가급적 프로그램의 진행방법까지 구체화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 4) 모둠별 토론이 끝나면 교육 기획안을 정리해 발표한다. 한 모둠의 발표가 끝날 때마다, 다른 참가자들은 좋았던 점, 보완이 필요한 점 등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다.